

3. '98 보안관찰법 실태

3-1. 98년 보안관찰법 실태

우리나라에 있는 사상단압법과 제도로 국가보안법과 준법서약제, 그리고 보안관찰법이 있다. 이 세 가지는 모두 양심과 사상의 자유를 억압하는 실제적인 기제로 이용되어 왔으며 서로 맞물려 작용하고 있다. 요컨대 국가보안법으로 형을 살고 있는 사람들은 누구나 사면의 조건으로 준법서약서를 쓸 것을 강요당하며 석방된 후 사회에 나와서는 보안관찰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98년 한해 동안 석방된 양심수는 164명이다. 이들은 전부 보안관찰대상자가 되고 이중 몇 명은 보안관찰피처분자(=피보안관찰자, 경찰이 요주의 인물로 판단하면)로 구분되었을 것이다.

현재 정확한 보안관찰대상자의 수나 피처분자의 수는 파악되지 못하고 있다. 이는 정부가 보안관찰대상자에 관한 정보를 비밀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94년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야당의원에게 구두보고한 것에 의하면 대상자는 3천명, 피처분자는 700명 정도라고 했다. 정부의 보고를 그대로 믿는다 해도 실로 엄청난 숫자이다.

최근에는 보안관찰처분 취소소송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이 가운데 98년 6월 18일 장민성(사노맹사건, 91년 구속, 96년 1월 출소)씨가 낸 소송에 재판부는 재범의 위험성을 판단할만한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보안관찰처분 취소 판결은 내렸다.

그러나 한편에선 출소 이후 신고를 하지 않거나 협조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연행하는 사건도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98년 한해 동안 보안관찰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은 사람들은 다음과 같다.

*함세환 / 98. 1. 22/ 징역 8월, 집행유예 1년 선고 / 집회 참석 이유

방양균 / 98. 1. 23/ 20만원 벌금형 / 신고불이행

홍중희 / 98. 2. 20/ 100만원 벌금형 / 신고불이행

김삼석 · 이혜정 / 98. 11. 13/ 신고거부 이유 경찰서 연행

이런 가운데 인권단체에서 보안관찰법 폐지운동의 움직임이 일고 있다. 인권운동사랑방은 98년 6월 27일 보안관찰법 설명회를 가진 것을 계기로 폐지운동을 시작했다. 지역에서는 전북평화와인권연대와 인권운동젊은연대가 전북지역 보안관찰대상자 실태조사를 벌인 바 있다.

3-2. 보안관찰법이란 무엇인가

1) 보안관찰법 적용대상

①형법상 내란목적 살인죄(형법 제88조), 동 미수죄(형법 제89조), 동 예비음모죄(형법 90조), 외환유치(제92조), 여적(제93조), 모병이직(제94조), 시설제공 이적(제95조), 시설파괴 이적(제96조), 물건제공 이적(제97조), 간첩(제98조) 및 이러한 범죄들의 미수(제100조)와 그 예비음모(제101조)

②군형법상의 반란죄(군형법 제5조) 및 반란목적의 군용물 탈취죄(제6조)와 양범죄의 미수(제7조) 및 예비음모(제8조), 이적목적 반란불보고죄(제9조 제2항), 군대 및 군용시설 제공, 군용시설 등 파괴, 간첩, 일반이적 및 동 범죄의 미수·예비·음모(제11조 내지 16조)

③국가보안법상의 목적수행죄(제4조), 자진지원·금품수수죄(제5조), 편의제공 중 무기제공죄(제9조 1항 및 3항)

④보안관찰법 부칙 제2조에 의한 구형법, 구 비상사태하의 범죄처벌에 관한 특별조치령, 1948년 제정이후 현행 국가보안법이 제정되기 이전까지의 구 국가보안법, 구 반공법, 구 국방경비법, 구 해안경비법의 상기 1-3호에 상응하는 범죄.

위의 보안관찰 해당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기 합계가 3년 이상인 자로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은 '보안관찰처분 대상자'이다(법 제3조). 보안관찰법은 '보안관찰처분 대상자' 모두에게 적용되는 법이다.

보안관찰법의 목적은 동법이 보안관찰처분 대상자로 포함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권력의 끈질긴 추적과 통제에 있다. 더욱이 그 적용대상이 과거 사회안전법상의 보안감호처분 대상자보다 훨씬 더 넓은 범위의 사람들에게 적용되고 있다. 다만 보안감호에 비해 좀더 넓은 감옥이라 할 수 있는 일종의 '사회내처우'이기는 하지만, 보안관찰법은 보안관찰처분 대상자 모두에게 그 사상의 전향 여부를 불문하고 평생동안 예외없이 창살없는 감옥을 제공하고 있는 법이다.

2) 보안관찰처분의 절차

보안관찰처분은 제3조에서 규정한 보안관찰처분 대상자가 보안관찰해당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이유'가 있는 사람에게 재범의 방지를 위하여(제4조),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제7조), 보안관찰처분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제12조), 법무부장관이 결정한다(제14조). 보안관찰처분이 면제될 수 있으려면,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준법 정신이 확립되고, 일정한 주거와 생업이 있으며, 그리고 검사 또는 일정한 지위에 있는 2

인 이상의 신원보증인의 신원보증이 있어야 한다는 엄격한 요건이 충족되어야 면제결정을 받을 수 있다.

여기에서 준법정신의 확립이라는 말은 소위 반성문 내지 전향서의 제출을 근거로 삼고 있다.

3) 보안관찰의 내용

보안관찰법이 규정하고 있는 감시와 통제의 체계는 한치의 틈도 없는 치밀한 그물망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째, 모든 보안관찰처분 대상자는 죽을 때까지 보이지 않는 경찰의 감시대상이 된다. 누구든지 보안관찰처분 대상자가 되면 인적 사항, 가족 및 교우관계, 입소전의 직업, 본인 및 가족의 재산상황, 학력, 경력, 종교 및 가입단체, 병역관계, 출소예정일, 출소후의 거주 예정지 및 그 도착예정일, 보안관찰 해당범죄사실에 관한 상세한 자료 등을 기재한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 신고서와 관계서류는 대상자가 어디를 가든지 신 거주지 관할 경찰서장 등에게 송부된다(시행령 제9조 제4항). 그리고 보안관찰처분 대상자에 대하여는 항상 동태파악을 하게 되어 있으며(시행령 제11조), '보안관찰처분 대상자 관리부'가 작성되고(시행규칙 제9조), 동태파악에서 소정의 변동사항이 기록되고 검사에게 보고된다. 그리고 이 관리부는 준영구적으로 보관하도록 되어 있다.(시행규칙 제52조 제10호) 보안관찰처분 대상자 모두에 대한 이러한 영구적인 감시제도는 보안관찰법에서는 어느 조항에서도 예정되어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입법인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의해서 세밀하게 제도화되어 있다.

둘째, 보안관찰처분을 받은 사람은 앞에서 설명한 보안관찰처분 대상자에 대한 감시와 통제보다 훨씬 더 엄격한 감시와 통제의 대상이 된다. 보안관찰처분을 받은 사람은 항상 관할경찰서의 동태관찰의 대상이 되며, 앞의 보안관찰처분 대상자 관리부에 등재되어 있음에도 다시 또 '보안관찰부'에 등재되며(동법 시행령 제4조), 이 보안관찰부에는 1개월마다 기재사항의 변동이 기록되어 준영구적으로 보관된다(시행령 제24조 제4항, 시행규칙 제41조 제4항 및 제52조 제9호). 피보안관찰처분 결정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관할경찰서장에게 일정한 사항을 신고하고(법 제18조 제1항), 3개월마다 그 변동사항이 있든 없든 간에 주요 활동사항, 통신·회합한 다른 보안관찰처분 대상자의 인적사항과 그 일시 및 장소와 내용, 여행에 관한 사항, 기타 관할경찰서장이 신고하도록 지시한 사항 등에 대해서도 신고해야 한다(법 제18조 제2항).

셋째, 보안관찰법은 피보안관찰자의 재범방지와 사회복귀를 위해 일정한 '지도'와 조치를 할 권한을 검사와 사법경찰관에게 주고 있다(법 제19조). 그런데 지도의 내용을 보면, 피보안관찰자와의 긴밀한 접촉으로 '항상' 그 행동 및 환경 등을 관찰하는 것, 피보안관찰자의 신고사항 이행에 필요한 지시를 하는 것 등으로 되어 있다. 지도라는 미명하에 항상적

인 감시와 통제를 하는 것이다.

넷째, 보안관찰법은 피보안관찰자의 개선과 자위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주거 또는 취업의 알선, 직업훈련 기회의 제공, 환경 개선 등의 보호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법 20조).

다섯째, 보안관찰법은 동법에서 부과하고 있는 일정한 감시의 체계를 벗어나는 일체의 행위에 대해 형별로써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보안관찰처분 대상자 또는 피보안관찰자가 은신 또는 도주할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으로, 보안관찰처분 대상자 내지 피보안관찰자가 일정한 신고의무 기타 지시사항 등을 위반한 경우에는 1년 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게 된다(법 제27조).

또 보안관찰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등에게 비밀유지 의무를 부과하고 그 위반에 대해 형별로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어 보안관찰에 관한 일체의 통계자료조차 파악되지 못하고 있다.

여섯째, 보안관찰법은 보안관찰에 관한 제반 기록을 영구 내지 준영구로 보존하도록 하고 이는 결국 일단 한 번 보안관찰대상자가 되기만 하면 본인의 생전은 물론 후손에게까지 사상범의 후예라는 낙인을 찍게 되는 것이다.

4) 보안관찰법의 위헌성

이와 같은 보안관찰법은 다음과 같이 우리 헌법에 위배된다.

- ① 보안관찰법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반하는 법이다.
- ② 보안관찰법은 평등권을 침해하는 법이다.
- ③ 죄형법정주의 및 재판을 받을 권리 등을 침해하는 법률이다.
- ④ 사생활의 자유 및 거주·이전의 자유 등을 침해하는 법률이다.
- ⑤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유린하는 법률이다.

이렇게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는 보안관찰법이 계속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보안관찰법의 본질은 사상의 자유를 억압하는 데 있다. 사상범에게는 국민으로서 누려야 할 어떠한 자유도 허용하지 않겠다는 지배권력의 의지의 표현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결국 일반 국민으로 하여금 지배권력에 위험한 사상에 대해서는 일체의 접근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률이다. 따라서 보안관찰법은 '사상의 자유'를 박탈하는 법률로 기능하게 된다.

보안관찰법은 공안사범이라는 '희생양'을 불모로 하여 국민 일반의 권력에 대한 비판과 저항을 봉쇄하는 '권력의 경제책'이다. '공안사범'과 '공안기관' 그리고 '공안관계법'이라는 3자는 한국사회의 국가권력과 법질서를 지탱하는 중요한 베풀목의 역할을 해왔다. 공안기관은 공안관계법으로 공안사범을 만들어내면서 '공안'분위기를 조성하여 권력의 정당성의

위기를 돌파해왔다.

보안관찰법은 공안기관이 공안사법을 감시하고 통제하는 수단이다. 그러나 보안관찰법의 임무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보안관찰법의 임무는 국가보안법과 함께 우리 사회의 진보와 희망을 암살하는 것이다.

3-3. 도내 보안관찰피처분자 현황과 피해사례

보안관찰대상자 중 보안관찰처분에 처해진 피처분자의 수는 정확히 알 수 없다. 앞서 말한 것처럼 보안관찰대상자에 대한 자료가 비공개로 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략 전라북도에는 30여명이 있는 것으로 짐작하고 있다. 전북평화와인권연대와 인권운동젊은연대가 장기수출신자 위주로 98년 한해 동안 파악한 보안관찰 피해사례를 적어본다.

▲ 박봉현

(99년 현재 81세, 60. 6. 19 구속, 32년 살고 91. 12. 24 석방)

전주에 살며 북부경찰서 보안2계 이회관 형사로부터 일상전화를 수차례 받았다.

91년에 출소하자마자 일본에 있는 동생을 만나보려 가기 위해 여권을 내달라고 경찰에게 말했는데 보안과 형사가 아직은 안된다고 말한 적이 있다. 그 뒤 현재까지 여권은 나오지 않고 있다.

출소후 92년 초에 전주북부경찰서 보안과장이 파출소에 와서 “이제 여생이 얼마 안 남았으니 여행도 다녀오시라”고 하면서 신고를 종용해 출소신고서를 작성한 적이 있다. 그 뒤 일체 신고는 하지 않고 있다.

93년도 봄에 김영달 선생의 회갑연이 부안 사슴농장에서 열리기로 했는데, 사슴농장에 도착하자마자 5분 뒤 부안경찰서 경찰이 도착해서 회갑연 분위기를 흐렸고, 98년 3월 13일 김대중 대통령의 특별사면 때 다른 동료들의 출소인사를 못가도록 전날 오후 5시에 경찰이 집에 온 적이 있다.

이외에도 전화를 받자마자 뚝 하는 소리가 나면서 끊기는 적이 한달에 세 번 정도 있다.

▲ 허영철

(김제 거주, 부인과 함께 산다. 99년 현재 80세)

55년 구속, 91년 출소 후 보안관찰피처분자로 4번 간신, 파출소 담당직원이 바뀌면 인사하러 왔다고 들른다. ‘구역 담당’이란게 있어서 3개월에 한 번씩 보고한다고 한다. 무슨 인쇄물을 들고와서 이것저것 묻고 간다. 한 번은 일하는 아파트 관리소에 직접 찾아온 적도 있다.

전향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계속 간신하는 것 같다.

▲ 전창기

(55년 8월 20일경부터 10년 복역하고 65년 9월 20일 출소, 77년 1월 15일 사회안전법으로 느닷없이 끌려가 청송감호소에 입소하여 12년을 더 살고 89년 9월 출소. 99년 현재 82세, 군산거주)

90년 봄, 서울 송파에 있는 여동생과 같이 살고 있었다. 건축공사 관계로 군산에 가게 되었는데 서울 송파경찰서 경찰이 군산에 가려면 군산에 가서 입적시키라고 했고, 이에 대해 전창기 선생이 “나는 돈벌어서 오겠다”고 했다. 그러자 경찰이 “그려면 도장만 맡기고 가라”고 했다.

그 뒤 91년 여름부터 군산경찰서로 관할이 옮겨졌는데, 검찰이 어떻게 돼서 서울에 있다가 군산에 오게 되었느냐고 물었고, 군산 나운동 주공아파트에 살 때 통장이 “당신 때문에 고생이다. 당신 집에 누가 오지 않느냐’, ‘어디 가지 않았느냐’라는 질문을 형사가 와서 한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다. 93년에 어느 한 교회에서 강연한 이튿날 군산경찰서 보안과에서 전화를 해와 “어디 갔었느냐”고 물어서 전창길 선생은 “익산 어여한 교회에서 한마다 했다”고 밝혔다. 그 뒤 이 교회 강연관계로 경고장을 받은 적이 있다. 또 군산산업대 강연을 마친 뒤 두 번째 경고장을 받은 적이 있다. 93년 여름에는 범민족대회 행사의 하나인 통일대행진이 전주에서 있었는데 그 행사장에서 갑자기 강연요청을 받아 그 자리에서 “입은 있으되 말은 못합니다”라고 말한 적이 있는데 그 이튿날 경찰이 찾아와 “요새 수고하십니다”라며 술과 과일을 준비해 오기도 했다. 이것을 전창기 선생은 이를 전 행사장에서 정치적인 발언을 하지 않은 데 대한 감사의 표시로 생각했다.

94년 여름 김영삼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군산에 온다고 했을 때 경찰이 강제로 자동차 서비스공장을 데리고 가 점심식사를 한 적이 있다.

96년 전북대 한총련 출범식을 전후로 해서 집에 들려보니, 정복입은 경찰이 찾아왔다고 했다. 다음날 전창기 선생은 경찰에게 전화해서 “당신네들 내가 지금 이 집에서 신세지고 있는데, 왜 나의 처지를 어렵게 만드느냐”고 하자, 경찰이 파출소 순경들이 잘못한 모양이라고 말한 적이 있고, 한총련 출범식 날에는 경찰이 오늘 남원 춘향제에 가자며 출범식 참여를 막아 경찰과 함께 마이산을 강제로 갔다 온 적이 있는데, 저녁식사 때까지 잡혀 있어서 하루종일을 연금상태에 있었다.

▲ 문규현

(95년 12월 보안관찰법위반으로 기소, 계류중)

90년 6월 11일 방북사건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 92. 12. 24 성탄특사로 가석방 출소 뒤 김제경찰서장에게 출소사실을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95년 12월 보안관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소 기소되어 현재까지 계류중.

▲ 오기태

(99년 현재 70세, 69. 7. 10 구속, 89. 12. 23 출소)

건축업을 하면서 살기 때문에 항상 이동한다. 이동할 때 경찰에 신고해주면 곧 전화가 온다. 이동하면서 여관에서 여러날 묵기도 하는데 경찰이 여관도 찾아와 여관에서 숙어한다. 영종도에서 서너달 있었는데 거기까지 찾아왔다. 남쪽에 가족이 없다는 이유로 계속 생신되고 있다.

▲ 김영식

(99년 현재 67세, 62년 구속 88년 가석방, 일용직 노동자)

처음 나와서 구이(전북 완주군 구이면)에서 일할 때 경찰이 맨날 찾아와서 들여다 봤다. 감옥에서 나올 때 보증인이 없으면 위탁소에 가게 생겼는데 남문화방 사장이 보증을 서줘 담례로 남문화방에서 3년 일했는데 경찰이 계속 찾아왔다.

그러다 소양 수양관에 맡겨졌는데 경찰이 원장에게 나에 대해 확인하곤 했다. 거기서 여러 잡일하고 살았다. 그러다 어느날 정원에서 꽃으로 별모양을 만들었다. 이것을 원장이 이복을 상징하는 것이라 해 다투고 나와버렸다. 시내로 나와서 집짓는 데서 일하고 있는데 수배가 떨어졌다며 연락을 받고 북부서로 갔더니 자신들 속썩인다고 공갈했다. 그리고 이서에 있는 배농장에 날 맡겨놨는데 3년 동안 일만하고 돈한푼 못받고 나왔다. 경찰은 나를 자꾸만 어디다 맡겨놓으려고만 한다. 그래서 노예일만 했다. 하여간 감옥 나와서 경찰 때문에 망했다. 맨날 찾다가 업주한테 맡겨 일만 하고 돈도 못받고 노예노동만 했다.

전북평화와인권연대와 인권운동젊은연대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비전향장기수들은 출소 이후 100% 보안관찰피처분자가 된다. 이들은 석방되고 2~3년 정도 경찰의 감시에 시달리다 이제는 좀 뜻한 편이라고 한다. 그러나 아직도 집회나 행사가 있으면 나가지 말라는 연락을 받곤 한다.

[참고자료] 보안관찰처분 기간갱신 청구서, 의견서, 경고서

전주지방검찰청군산지청

1998 생신사안 제 호

1998. 9. 17.

수 신 법무부장관

발 신 전주지방검찰청군산지청

제 목 보안관찰처분 기간갱신 청구

검사 1기 1호



아래사람에 대하여 보안관찰처분 기간갱신을 청구합니다.

피 청 구 자	주 소 직업 주민등록번호 성 명 생년월일	군산시 지곡동 530-1 무직 180410 - 1333611 전창기 (全昌基) 1918. 4. 10.
---------	------------------------------------	--

청구원인사실

불임과 같음

거소제공 (변경)	결정일
	시설명 및 소재지

불임 : 의견서 1통

청구원인사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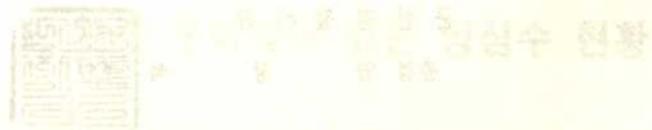
피청구자는 1918. 4. 10. 충남 천안시 봉명동에서 출생하여 1934. 7. 경 양정중학교 2년을 중퇴한 후 광부등으로 종사하다가 8. 15해방후 1946. 8. 경 평남 평양시 및 대동군 내무서등에서 근무하다가 1947. 11. 30. 조선노동당에 가입하여 내무서 소위로 승진된 후, 신의주 제재소 초급 당부위원장 등으로 활동하던 중 1955. 2. 23. 노동당 중앙당부에서 5개월간 간첩교육을 받은후 같은해 7. 30.경 충남 보령군 주포면 앞 해안으로 침입하여 간첩활동 준비를 하다가 체포되어 1956. 2. 17. 대전지방법원에서 간첩미수죄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서울, 대구, 대전 등의 교도소에서 복역하다가 1965. 9. 21. 만기출소한 보안관찰대상자로서 1992. 10. 22., 1994. 10. 26., 1996. 10. 29. 보안관찰처분의 기간을 갱신하여 1999.

1. 12. 동 처분의 기간이 종료되는 자인바,

북한에 처와 자녀 4명이 현재 거주하고 있고, “자본주의 사회는 부익부, 빈익빈이 심화되고 대자본이 지배하는 등 전체적으로 평등하지 못한 관계로 그러한 차이가 없이 골고루 일정한 최저생활이라도 유지되는 공산주의 사회가 더 낫다”는 등 공산주의 사상을 확고하게 신봉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북한은 외세에 의존하지 않고 자주적으로 자립경제, 북방문제 등을 잘 해결

하고 있다는 등, 북한의 체제를 찬양하면서 계속하여 전향을 거부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비록 고령이라고 하나 전쟁발발등 사태발생시 보안관찰 해당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이유가 있으므로 보안관찰의 기간을 갱신하여 재범의 방지를 위한 관찰이 계속

필요한 자임



경고서

전장기귀하

귀하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경고 합니다

만일 경고 내용을 위반하는 때에는 보안관찰법 제27조 규정에 의하여 형사처벌등 불이익한 처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다음

1. 경고일시: 92. 8. 11.

2. 경고이유: 보안관찰법 제22조 위반으로 인함

3. 경고내용: 92.8.10.19:30 - 21:30까지 이리에덴교회 강연회 참석 발언한

- 0. 김 일 성에 대한 친양과 남여 평등문제·산모휴가제·교육제도·농촌제도 전반에 대한 북한의 우월성 친양
- 0. 6.25전쟁은 남침이 아니고 북침이다. 자본주의 사회의 부조리·미제국주의와 군사독재로 인하여 통일이 되지 않고 있다
- 0. 군산에는 다행의 핵무기가 있는데 북한은 핵사찰 이후 이상이 없다고 했어도 미국이 일방적으로 핵사찰을 뜯집 잡고 있다
- 0. 필리핀은 미군주둔비를 미국이 내는데 한국은 미군주둔비를 한국국민이 부담하고 있다 그것도 한국이 애원해서 불들고 있다
- 0. 교도소에서 전향하면부장으로 특진시켜 준다 또한 폭력배를 시켜 구파향위로 정향을 시키면 그 폭력배는 즉시 석방 한다 는등의 현실왜곡 및 거짓말언

92년 8월 11일

군산경찰서장

총경 양창석



[4] 양심수 / 장기수

1. 양심수란 무엇인가?

양심수란 용어는 원래 세계적인 인권단체인 국제앰네스티(국제사면위원회)의 규약에서 나온 말이다. 국제사면위원회에 따르면 양심수는 “폭력을 행사하거나 옹호함이 없이 정치적, 종교적, 또는 그 밖의 양심에 입각한 신념의 표현을 이유로 세계인권선언과 국제인권규약에 위배되는 투옥, 구금, 육체적 억압을 비롯한 여러 형태의 구속을 받고 있는 사람”이다. 이때 그 폭력성의 유무는 정부의 발표나 판결문의 내용만으로 판단해서는 안된다. 폭력을 행사하더라도 그것이 처음부터 계획된 것이 아니라 사건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된 경우에는 그 행위자를 양심수로 분류할 수 있다.

또한 국제사면위원회에 의하면 “법률의 실질적인 입법 목적이나 법률집행의도가 국제인권규약의 기본정신에 위배될 때 그 법을 어긴 사람” 이거나 “어떤 사람이 인간의 기본권을 지키거나 쟁취하기 위해 행동한 결과 법률적 불이익을 받은 사람” 일 뿐만 아니라 “행동시에는 양심수에 속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사법적 절차 과정에서 인권을 침해받았거나 행동한 결과로 법률적 불이익을 받은 사람”은 모두 양심수라는 것이다.

법률의 제정 목적에서, 제정 절차에서, 그리고 법률적 내용에 있어 국제인권규약의 기본정신에 위배되고 있는 국가보안법 등의 악법으로 구속된 사람은 분명 양심수이며,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구속된 노동자, 농민, 철거민, 노점상 등도 양심수이다. 또한 자신의 신념을 지키기 위해 전향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장기 구금되어 있는 사람들도 다 양심수이다. 설령 객관적 범죄사실이 있는 경우에도 수사과정에서 고문 등 인권침해가 있는 경우에는 그 때부터 양심수인 것이다.

2. 현재 구속되어 있는 양심수 현황

98년은 양심수 사면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기대와 관심을 가진 해였다. 이는 대통령이 과거 양심수였을 뿐 아니라 50년만의 정권교체로 이루어진 새 정부의 개혁의지에 대한 기대 또한 많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기대는 오히려 김영삼 정권 때보다 졸렬한 규모의 사면으로 실망과 분노를 가져왔다.

게다가 98년 7월에는 사상전향제도에 대한 국제적·국내적 비난을 모면하려는 법무부가 ‘준법서약제’라는 법을 들고 나와 많은 양심수들에게 혼란을 주었다.

새정부 들어 첫 사면이었던 3·13 때 정부는 당시 247명의 양심수 중 74명만을 석방했다. 이러한 첫 사면에 크게 실망한 많은 시민인권단체들은 강력한 항의 성명을 내고 대대적인 캠페인에 들어갔다. 양심수 석방에 대해 부담스러워하던 법무부는 급기야 7월 1일 “준법서약만 하면 석방시켜주겠다”고 발표해 또 한번 정국을 떠들썩하게 했다. 그러나 실제 8·15때 준법서약을 하고 석방된 양심수의 수는 94명에 불과했다. 이로써 김대중 정부의 개혁에 대한 믿음은 금이 가기 시작했다.

이후 준법서약에 대한 철회와 조건없는 양심수 전원석방에 대한 외침은 계속되고 있으나 김대중 정부는 준법서약을 해야만 석방할 수 있다는 입장을 계속 고수하고 있다. 양심수 석방에 헌신하고 있는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의 목요집회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 1998년 12월 26일 현재 총 290명

◆ 신분별 분류

총인원	학생	노동자	장기수	재야·기타	군·경
290	177(61%)	45(15.5%)	21(7.2%)	38(13.1%)	9(3.1%)

◆ 적용법규별 분류

총인원	국가보안법	특공·폭력	집시법
290	218(75.2%)	49(16.9%)	23(7.9%)

◆ 기결, 미결 분류

▷ 기결 116명

총인원	학생	재야·기타	장기수
116	86	9	21

▷ 미결 174명

총인원	학생	노동자	재야·기타	군·경
174	92	45	28	9

① 초장기수

번호	이름	나이	소속	사건명	구속날짜	적용법규	형량	만기일	수감지
1	우용각	70		남파	58.7.12	국보	무기	40년 구금	대전3514
2	최선목	72		남파	62.8.9	국보	무기	36년 구금	대전3612
3	안명기	69	경남상고	남파	62.8.12	국보	무기	36년 구금	대전3530
4	장병락	65		남파	62.4.5	국보	무기	36년 구금	대전3645
5	양희철	65	고려대졸	남파	63.4.24	국보	무기	35년 구금	광주5029
6	리경찬	64		남파	65.8.12	국보	무기	33년 구금	광주5047

7	최수일	59		남파	65.3.4	국보	무기	33년 구금	광주5015
8	김동기	67		남파	66.5.18	국보	무기	32년 구금	광주5042
9	이공순	65		남파	67.12.10	국보	무기	31년 구금	광주5041
10	박완규	69	청주상고졸	남파	67.9.9.	국보	무기	31년 구금	대전3624
11	김은환	69		남파	69.9.8	국보	무기	29년 구금	대전3640
12	김익진	69		남파	69.6.10	국보	무기	29년 구금	대전3574
13	양정호	68	부산상고	남파	69.6.18	국보	무기	29년 구금	대전3630
14	오형식	69	경북중졸	남파	69.6.12	국보	무기	29년 구금	대구3100
15	김창원	66		남파	69.6.12	국보	무기	29년 구금	전주2063
16	이재룡	55	어부	남파	70.6.19	국보	무기	28년 구금	광주5059
17	홍명기	70		남파	62.4.5	국보	무기	36년 구금	대구3125
18	조상록	53	경희대	일본유학	78.1.15	국보	무기	20년 구금	안동1310
19	손성모	66	승문중졸	남파	81.2.15	국보	무기	17년 구금	전주2011
20	신풍수	69	보성중졸	남파	85.2.16	국보	무기	13년 구금	전주2053
21	강용주	36	전남대	구미유학	85.8.5	국보	20년	13년 구금	안동1313

② 재야 장기수

번호	이름	소속	사건명	구속날짜	적용법규	형량	만기일	수감지
1	최호경	노동운동가	남한조선노동당	92.9.12	국보	무기(20년:감형)	6년 구금	전주2150
2	안재구	경희대강사	구국전위	94.6.13	국보	20년	4년 구금	대구3188
3	이화준	목포민정연	일본관련	94.8.26	국보	7년	2001/8	대전3626
4	조덕원	인하대	남한조선노동당	92.9.15	국보	8년	2000/9	안동1306
5	장창호	한양대졸	남한조선노동당	92.9.13	국보	12년	2004/9	대전3639
6	류락진	서예가	구국전위	94.6.14	국보	8년	2002/6	대전3562

③ 전주교도소 양심수

번호	이름	소속	사건명	구속날짜	적용법규	형량	만기일	수감지
1	김창원	장	남파	69.6.12	국보	무기	29년 구금	전주2063
2	손성모	장	남파	81.2.15	국보	무기	17년 구금	전주2011
3	신광수	장	남파	85.2.16	국보	무기	13년 구금	전주2053
4	최호경	재	남한조선노동당	92.9.12	국보	무기	6년 구금	전주2150
5	유충복	명지대	총학투쟁국장	97.4.21	집시	2년 6월	1999/10	전주2013
6	김종대	고려대	서총련간부	98.3.21	국보	2년	2000/3	전주2027

④ 군산교도소 양심수

번호	이름	소속	사건명	구속날짜	적용법규	형량	만기일	수감지
1	박학서	건국대	6.13 집회	98.06.15	집시	1.6+8		군산952
2	이호준	건국대	이석씨 관련	97.06.05	상해치사	2년 6월	99/12	군산982
3	김세진	고려대	충청총련조통실장	97.05.12	국보	2년	99/05	군산962
4	설증호	단국대	8.15한총련사건	96.08.21	집시, 폭력, 국보	5년(잔1/2)		군산999
5	노윤조	영남대	총학부회장	97.06.22	국보, 집시	2년 6월	99/12	군산981

※ 전북출신 학생 양심수

번호	이름	소속	사건명	구속날짜	적용법규	형량	만기일	수감지
1	이태환	전북대	8.15한총련사건	96.08.21	집시, 폭력, 치사	3년6월	2000/02	청주86

- 자료출처 :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1998년 12월 자료) -

3. 양심수 석방을 위한 전북지역 활동

① 양심수 후원의 밤

일시: 1998년 1월 22일

장소: 전주 동학혁명기념관

주최: 전북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내용: 전북출신의 강희남목사를 비롯한 양심수 석방촉구와 양심수 지원을 위한 후원행사를 진행함

② 양심수 전원석방을 위한 시국기도회 및 현수막 부착

일시: 1998년 1월 23일

장소: 전주 평화동성당

주최: 천주교 정의구현 전주교구 사제단

내용: 성직자 25명과 신자 300여명이 모여 조건없는 양심수 전원석방을 촉구하고 전북지역의 성당에 양심수 석방을 촉구하는 현수막 부착. 박노해(사노맹 사건, 무기수) 친형인 박기호 신부가 강론함

③ 양심수 면회거부 항의농성

일시: 1998년 1월 23일

장소: 전주교도소 앞, 안기부 전북지부 (구)청사

주최: 천주교정의구현 전주교구사제단

내용: 전주교도소에 있는 12명의 양심수를 면회하고자 했으나 교도소측이 거부하여 전주교도소와 안기부 전북청사에 들어가 장시간 항의농성을 함

④ 통일인사 강희남목사 석방을 위한 기도회 및 강연회

일시: 1998년 2월 8일

장소: 전주 임마누엘교회

주최: 통일인사 강희남목사 석방을 위한 전북지역 대책위

내용: 성직자 30여명과 신자200여명이 모여 80고령의 강희남목사의 석방을 촉구하는 탄원을 제출함. 한승현 변호사가 참여하여 강연을 함.

⑤ 전주교도소 양심수 처우개선과 접견불허 철회를 위한 항의농성

일시: 1998년 2월 10일~13일

장소: 전주교도소 앞

주최: 전북지역 인권단체

내용: 전주교도소의 양심수에 대한 인권유린 사태가 진행되자 교도소 내에서 단식농성이 진행되고 이를 고발하고 이에 동조하는 항의농성을 진행함

⑥ 양심수 선별석방에 관한 전북지역 인권단체들의 합동논평

일시: 1998년 3월 13일

장소: 전주교도소 앞

주최: 전북지역 인권단체

내용: 김대중 정권의 생색내기용 만기대기자 선별석방을 규탄하고 강력한 항의를 표시함

⑦ 통일인사 강희남목사 석방 환영대회

일시: 1998년 3월 26일

장소: 전주 성광교회

주최: 통일인사 강희남목사 석방을 위한 전북지역 대책위

내용: 민족과 조국을 사랑한 강희남목사의 석방을 환영하고 양심수의 전원석방을 촉구함. 김봉술(천주교정의구현전주교구사제단 총무)신부가 참여하여 강론을 함

⑧ 양심수 전원석방 서명운동과 리본달기 운동

일시: 1998년 8월 3일~6일

장소: 전주 객사 앞

주최: 전북평화와인권연대

내용: 전북지역 시민들의 서명과 리본달기를 통해 양심수 석방을 촉구함

⑨ 국가보안법 철폐와 양심수 석방을 위한 강연회

일시: 1998년 8월 6일

장소: 익산 황실예식장

주최: 민족의 화해와 평화통일 위한 대축전 전북본부

내용: 무차별로 진행되는 공안탄압 중지와 국가보안법 철폐 그리고 양심수 석방을 촉구함. 홍근수(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상임대표)목사가 참여하여 강연을 함

⑩ 조건없는 양심수 전원석방을 위한 전북지역 사회단체 대표자 기자회견 및 하루 감옥체험

일시: 1998년 8월 6일

장소: 전주 중앙성당

주최: 전북지역 인권단체

내용: 모든 양심수의 전원석방을 위해 전북지역의 100인 인사들이 기자회견을 가졌고 양심수의 고통에 함께하고자 하루감옥을 실시했음

⑪ 양심수 석방 환영과 준법서약제 폐지를 촉구하는 성명서 발표

일시: 1998년 8월 15일

장소: 전주교도소 앞

주최: 전북지역 인권단체

내용: 준법서약제를 근거로 양심수를 선별석방한 김대중정권에 항의하며 모든 양심수의 즉각적인 석방을 촉구함

⑫ 국가보안법 철폐와 통일사제 문규현 신부 석방을 위한 기자회견

일시: 1998년 9월 4일

장소: 전주 가톨릭센타

주최: 천주교 정의구현 전주교구 사제단

내용: 사제단의 방북을 허가하고 구속한 김대중정권에 항의하며 즉각적인 문규현신부의 석방을 촉구함

⑬ 통일사제 문규현 신부 석방을 위한 시국기도회

일시: 1998년 9월 4일~10월 13일(매주 금요일)

장소: 전주 서학동성당, 중앙성당

주최: 천주교 정의구현 전주교구 사제단

내용: 문규현신부 구속을 규탄하고 문규현신부의 석방을 촉구함

⑭ 세계인권선언 기념 전북지역 200인 기자회견

일시: 1998년 12월 10일

장소: 전주 가톨릭센타

주최: 전북지역 인권단체

내용: 준법서약제 철폐와 양심수의 조건없는 석방을 촉구함

4. 전주교도소에 장기구금되어 있는 양심수

① 손성모(70세)

손성모씨는 1930년 1월 15일 전북 부안군에서 태어났다. 서울대 재학중 전쟁이 일어나자 의용군에 입대, 북으로 갔다. 함남 화학공업대학교 교수로 있었다. 1980년 남쪽 고향에 왔다가 1981년 2월 15일 치안본부에 체포, 무기형을 받고 현재 19년째 수감중이다. 북에 부인과 자녀가 있다.

② 신광수(71세)

1929년 6월 27일 생, 1985년 2월 16일 구속, 15년째 복역.

신광수씨는 보성중학 재학중 의용군 입대, 북에 감. 루마니아 부쿠레시티 공과대학 기계공학 전공. 귀국후 과학원 기계공학연구소 연구원, 장기간 일본생활, 85년에 서울에 왔다가 체포, 무기수로 15년째 복역. 현재 신광수씨는 71세의 고령에다 고혈압, 위장질환을 앓고 있다. 북에 부인과 딸이 있다.

③ 김창원

1969년 6월 12일 구속되어 무기형을 살고 있다. 현재 30년째 전주교도소에 수감중. 1999년 3.1절 특사(2월 25일) 때 석방될 예정이다.

④ 최호경

최호경(41세, 노동운동가, 경북 청송군 현서면 사촌동 208호)씨는 80년대 중반 성남지역에서 노동운동을 하고 1992년 9월 12일 구속당시 민중당 성남지구당에서 일을 했다.

가족은 75세의 모친과 39세의 처 황선희(미싱사)와 초등학교 6학년의 최민혁을 두고 있다. 최호경씨는 소위 남한조선노동당 중부지역당 사건으로 구속되었는데 당시 92년 대선을 앞두고 간첩 이선실 관련 대규모 조직사건으로 그 진상이 제대로 규명되지 못한 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최호경씨는 지난 98년 8·15사면 때 시행했던 준법서약에 대해 “나 혼자라도 감옥에 남아 준법서약제와 싸우겠다”며 서약을 거부하고 현재 전주교도소(수번 2150)에서 7년째 수감되어 있다.

4-1. 전북지역 출신 장기구금 양심수 - 조작간첩 이화춘

이화춘(40세, 농업, 전북 익산시 삼기면 기산리 364)씨는 소위 일본사건과 관련하여 국가

보안법 위반혐의로 1994년 8월 26일에 구속되어 7년을 선고받고 대전교도소(수번3626)에 수감되어 있다.(2001년 8월이 만기)

가족은 처 이순덕(양봉업)과 중학생인 딸 그리고 초등학생인 아들 둘을 포함하여 세 명의 자녀를 두고 있다.

이화춘씨는 고등학교 2학년 때 숙부 이좌영의 소위 '울릉도 간첩단 사건'에 아버지와 여러 친척들이 연루되어 많은 고통을 당하는 것을 보고 큰 충격을 받았고, 집안은 계속되는 감시와 주변의 질서로 정신적·물질적 고통을 당했으며 취직을 하려고 해도 잘 되지 않아 본적지에서 농사를 짓고 살던 중 우연히 익산 지역에서 민주화운동을 하는 사람들을 만나 농민운동을 하게 되었다. 이후 동료들의 권유를 받아 민중당 익산지구당 사무국장 등을 역임하면서 91년 7월 사노맹의 후보 조직원이 되었으나 이후 사노맹 조직이 탄압에 의해 활동이 정지·해체되고 본인도 별다른 활동없이 지내다 양봉업을 하면서 생업에 종사했다. 그러던 중 일본에 있던 숙부 이좌영과 연락이 닿아 일본에 다녀오기도 하고 숙부를 통해 생활비를 지원받게 되었는데 이것을 가지고 1994년 8월 주사파파동 이후 전격적으로 안기부에 의해 간첩으로 몰려 2대에 걸쳐 소위 조작간첩이 되었다. 현재 지난 98년 8·15 사면 때 시행했던 준법서약을 거부하고 대전교도소에서 수감되어 있다.

[5] 재소자의 인권 - 교도소 / 행형 실태

1. 교도소의 가혹행위

교도소는 행형(行刑)사무를 다루는 기관으로서 수형자를 교정 교화하며 건전한 국민사상과 균로정신을 함양하고 기술교육을 실시하여 사회에 복귀하게 하는 곳을 일컫는다. 따라서 이곳에서는 충분한 인권이 보장되어야 하며 부당한 처우는 있을 수 없다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

1998년에 여러 교도소에서 교도소 내 규율을 어긴 재소자들에게 가혹하리만큼의 징벌을 가한 것이 폭로돼 물의를 빚었다. 이 징벌은 24시간 동안 재소자의 손과 발을 쇠사슬로 묶어놓은 상태로 독방에 수감함으로써 엄청난 고통을 안겨주는 것으로서 오로지 규율만을 앞세운 교도행정이라는 지적과 함께 부당한 인권침해라는 비난을 받았다.

현행 수용자규율 및 징벌에 관한 규칙에 규정된 징벌은 독방(금치) 및 청원작업금지, 도서열람제한 등으로 독방의 경우 기상 후부터 취침 전까지 바쁜 자세로 앉아 반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평도 채 안되는 조그마한 감방에 수감되는 것 자체가 재소자에게는 커다란 고통을 줄 수 있어 독방 수감은 교도소 내에서도 가장 무거운 징벌로 꼽히고 있다.

전주교도소의 경우 98년 2월 독방에 수감된 재소자를 제대로 움직일 수조차 없을 정도로 손과 발을 묶고 수감하는 지나친 징벌을 가했던 것으로 알려져 언론을 떠들썩하게 했다. 이는 인권의 사각지대라 할 수 있는 교도소 내 인권유린의 극치를 보여준 단면이라고 할 수 있겠다.

쇠사슬은 징벌의 수단이 아닌 포승줄과 같은 계구의 일종으로 소란 및 자해, 자살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 예방차원에서 극히 제한적으로 허용되는 것인데 전주교도소측은 징벌을 받은 재소자를 쇠사슬로 묶고 보통 1주일에서 길게는 2개월여 동안을 수감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2. 전주교도소 '양심수 인권유린' 사례

가. 이유없이 서신왕래조차 제한 : 한 재소자는 특정인에게 편지를 써 보내는 것이 금지당 했을 뿐 아니라 제3자를 거쳐 편지를 전달하는 것도 허락되지 않음.
나. '대여허가도서목록'에 올라있는 책조차 반입 불허
다. 접견은 월 가족 2회로 제한되어 있고 가족 이외의 일반인에 대한 접견은 일체 불허되고 있음. 타교도소들은 가족접견을 월 2회로 제한하지 않는 것은 물론 일반인 접견도 자

유로운 데 비하면 형평에도 맞지 않음.

라. 소내 규정은 재소자를 2년 이상 독거방에 수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나, 양심수들은 여전히 이의 적용을 받지 못한 채 독방수감 생활을 계속하고 있다.

마. 10년~30년 형을 살고 있는 장기수에게 시내 병원이나 약국에서 약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금지되는 것도 타지역 교도소와 전혀 다른 점이다.

3. 전주교도소 ‘양심수’ 접견제한 철회를 위한 전북지역 인권단체 항의농성 사건일지

98년 2월 천주교정의구현전주교구사제단, 전북인권선교협의회, 전주고백교회 등 전북지역 인권단체들은 전주교도소측이 부당하게 양심수에 대한 접견을 제한하는 것에 항의해 농성을 벌였다. 결국 목사·신부 등 종교인에게만 월 2회 면회를 허용받는 것으로 마무리되었다.

다음은 사건일지이다.

▶ 97년 10월 이후로 기존의 허용됐던 양심수 면회가 불허됨

전북인권선교협의회(인선협), 민가협 회원과 고백교회, 사제단의 면회가 거부되었음

▶ 97년 11월 인선협 목회자들 양심수 접견불허 항의시위

▶ 97년 12월 30일 - 인선협, 민가협, 고백교회 양심수 면회거부, 영치금 반입도 막음

▶ 97년 12월 31일 - 인선협, 목회자들 양심수 접견불허 항의시위

▶ 98년 1월 23일 - 천주교 사제단 양심수 면회 거부됨, 이에 대한 항의시위

▶ 98년 2월 초 - 민가협 회원 양심수 면회 거부됨

▶ 98년 2월 2일 - 전주교도소 양심수 단식농성 돌입 (전주교도소 인권탄압규탄 ; 처우개선을 요구함)

▶ 98년 2월 10일(화)

오전 10시 - 교도소 인권탄압(접견제한, 서신검열 등) 중단요구 항의시위(150여명)

10시 30분 - 대표단 구성 및 전주교도소장 면담 : 면담과정에서 소장은 “절대로 안된다”고 일관되게 거부

오후 1시 - 전주교도소장실에서 대표단 무기한 단식농성과 성명서 발표

오후 6시 30분 - 장영달 국회의원 교도소장 면담

오후 7시 30분 - 장영달 의원 입회 아래 “양심수 지정 3인을 2월 10일(수) 오전 10시에 면회 허용” 및 “1주 후에 또 다른 지정 3인 면회 허용”하고 “이후 기존 관행대로의 면회 허용” 등을 교도소장으로부터 약속받음.

오후 7시 50분 - 대표단의 경과보고 및 농성 해산

▶ 98년 2월 11일(수)

오전 9시 40분 - 대표단(김현식목사, 김진화신부, 오경숙회장, 한상렬목사 외 4인) 면회 신청

오전 10시 - 교도소측 전날의 면회허용 약속 일방적 파기: “약속한 적 없다”

오전 10시 20분 - 교도소 서무과장실에서 약속이행 요구 및 1차 소장 면담 요청 및 거부 : 전날 함께 있었던 부소장은 “무슨 약속을 했냐”며 오히려 행패를 부림.

오전 11시 - 2차 소장 면담 요청 및 거부

오전 12시 - 3차 소장 면담 요청 및 거부

오후 12시 20분 - 교도관 투입하여 목사, 신부들을 질질 끌어내어 강제 해산

오후 2시 - 전주교도소 양심수 면회 요구하며 항의농성 시작

오후 6시 - 교도소장 대표 2인(한상렬목사, 김진화신부) 면담했으나 소장은 두리뭉실하게 책임회피에만 급급함

오후 7시 - 상황의 변화가 전혀 없어 약속이행을 촉구하는 밤샘 천막농성 시작

▶ 98년 2월 12일(목)

오전 9시 10분 - 교도소 내에 미리 대기중이던 교도관과 교도대 300여명, 기습적으로 천막을 철거하고, 플랑카드 절취해감. 이 과정에서 이를 막던 한 신부의 코피가 터지고 한 목사는 다리를 걷어채이는 폭행을 당했으며 여러 사람이 타박상 및 찰과상을 당하는 등 부상을 입음. 차량훼손.

오전 12시 - 철거된 천막 앞에서 80여명 스치로풀을 깔고 교도소 정문을 차량으로 막고 농성

오후 1시 40분 - 점심식사를 준비하던 농성자들의 밥을 뒤엎고 국물을 신부, 목사들에게 끼얹음. 폭력테러를 자행한 최해룡 교도소장의 퇴진과 양심수 면회 전면허용을 요구하며 무기한 철야농성

▶ 98년 2월 13일(금)

오전 10시 - 밤샘농성했던 사람들을 수백명의 경찰을 동원하여 강제연행 및 강제해산

오전 10시 30분 - 목사, 신부 수십명 항의농성

오후 6시 - 항의농성자 70여명으로 늘어남

오후 7시 - 교도소측 요구로 대표단(한상렬목사, 백남운목사, 김봉술신부) 소장면담

오후 10시 - 전주교도소 양심수 면회허용과 교도소장 사과로 농성해제

4. 전주교도소 재소자 행정소송

전주교도소에 수감됐던 재소자가 만기 3개월을 남기고 자신을 대전교도소로 이송한 것과 관련 이송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전주교도소에서 98년 2월 23일 대전교도소로 이송된 김모(44세)씨는 '형량이 10개월에 불과한데다 앞으로 3개월만 지나면 출소하는 자신을 이송한 것은 관례상 없었던 일로 교도소측의 재량권을 남용한 처사'라며 이송처분 취소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김씨는 법원에 접수한 소장에서 "교도소측이 소내에서 일어났던 불법행위에 항의한 자신에 대해 보복차원으로 만기 3개월을 남기고 대전교도소로 이송하는 위법처분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또한 "미결수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10월 23일부터 51일 동안 기결수 독방에 수용해 징벌을 가하고 가혹행위를 일삼아 이를 문제삼자 교도소측이 이송 처분을 내린 것"으로 이는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며 행정소송과 함께 행정신청인 '이송처분 효력 정지신청'을 냈다.

그러나 김씨의 소송은 법원에 의해 기각됐다. 전주지방법원 특별부(재판장 이보현 판사)는 98년 3월 17일 "행형법상 수용자의 수용, 직업, 교화 기타 처우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 소장이 수용자를 다른 교도소에 이송할 수 있다"며 "이 사건 수용자 이송처분의 집행으로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씨는 97년 7월 사기죄로 구속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 10월을 확정받고 전주교도소에 수감되었다.

전주교도서 내에선 97년 10월부터 98년 3월까지 쇠사슬로 묶인 채 징벌을 당한 재소자가 1백여명에 이른 것으로 알려졌다.

5. 전주교도소 재소자 '의문사'

전주교도소 내에서 의문사가 발생했다. 98년 11월 21일 전주교도소는 전날인 20일 오후 11시 20분경 기결사 독방에 수감중이던 배재문씨(39)가 화장실 쇠창살에 내의를 찢어만든 끈을 연결해 목을 맨 것을 순시중인 교도관이 발견하고 병원으로 긴급 후송했으나 사망했다고 발표했다.

교도소측은 숨진 배씨가 형이 확정돼 복역하던 중 평소 가족이 면회오지 않고 강간 등 추가건으로 재판받는 것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자살한 것 같다는 보고서를 검찰에 냈다.

그러나 유족들은 교도소측이 공개한 배씨의 유서가 배씨의 평소 필적과 전혀 다르며 유서조작 의혹을 강력히 제기하고 있다. 또 배씨 사인에 대해서는 신경안정제 투약에 따른 쇼크사 의혹을 제기했다. 유족들은 98년 12월 1일 기자회견에서 "교도소측이 배씨의 유서라며 공개한 편지 두통이 배씨의 필적과 전혀 다른데다 초등학교를 중퇴한 배씨의 글이라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문장구성이 매끄럽다"고 주장했다.

유족들은 이같은 의혹의 증거로 배씨가 수감전인 지난 94년 전 부인 신모씨(32)에게 남

긴 배씨의 친필 메모와 92년 친형에게 보낸 편지를 공개했다.

사망시각에 대한 교도관의 진술과 전주 예수병원에서 사체를 최초로 검안한 의사가 말하는 사망추정시간의 불일치도 이 사건의 조작의혹을 부채질했다. 교도소측은 배씨를 응급조치한 다음 전주예수병원으로 옮겼다고 검찰에 보고했다. 또한 이후 이를 취재한 기자와 가족에게 배씨가 맥박이 있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사체를 최초로 검안한 의사は 현장에서 "숨진지 이미 오래됐다"고 말했다. 그 근거로 동공반사가 없고 동공이 모두 풀린 상태인 점, 손가락 두 개가 들어갈 만큼 항문이 벌어져 있고, 맥박은 없고 체온은 싸늘했다는 점 등을 들었다. 또 부검 당시 배씨의 위는 소화되지 않은 음식물로 가득 차 있었다. 정상적인 상태라면 식사 후 1시간도 채 안돼 사망했다는 추정이 가능하다. 교도소 저녁식사 시간은 오후 4시 30분~5시 30분경 사이다.

배씨의 형 배재준씨에 따르면 21일 새벽 전주교도소 관계자가 전화통화에서 자신에게 "19일 재판 때 소란을 피워 안정제를 주고 위로도 했는데 그날 그렇게 됐다(자살했다)"고 말했다고 한다. 사망시각이 교도소측의 공식 발표보다 하루 앞선 19일 오후였다는 의혹을 갖게 하는 대목이다. 또 진정제 투약 사실을 최초로 시인한 부분이기도 하다.

그러나 전주교도소측은 신경안정제 투약 사실을 공식적으로 부인했다. 이 밖에 △법정소란을 일으키면 교도관행상 징벌방에 수용하게 되고 이 경우 역시 교도관행상 두 손에 수갑을 채우고 다리부분에 쇠사슬을 채우게 돼 있는데 이 상태에서 목매 자살하기는 거의 불가능하다는 점 △사체를 물로 깨끗이 닦아낸 듯 사타구니 부위가 불어있는 점 △자살에 이용했다는 점에 의해 목을 매기 위해 지은 매듭이 없다는 점 △교도소측이 5일 이전까지 정당한 이유없이 배씨가 발견된 독방을 공개하지 않은 점 등도 의혹을 가중시켰다.

배재준씨는 "동생이 죽기 직전인 16일에도 가족이 동생을 면회했지만 죽으리라는 기미는 전혀 볼 수 없었다"며 "교도소 안에 있으면서도 자기 몸 수술해 달라고 여러 차례 요구할 만큼 삶에 대한 욕구가 강했다"고 밝혔다.

배씨는 지난 19일 전주지법에서 재판을 받던 중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재판을 거부하다 퇴장당한 바 있으며 지난 9월 17일부터 독방에 수용돼 왔다.

배씨는 필로폰을 흡입하다 적발돼 향정신성 의약품 관리법 위반혐의로 구속됐으며 2년 6월의 징역형을 확정받고 수감중이었다.

한편 사건에 대한 의혹이 수그러들지 않자 법무부 교정국은 3일 보도자료를 내 "언론이 유가족의 일방적인 주장만을 보도해 사실이 왜곡될 우려가 있다"면서 "유서의 필체는 옆으로 뛰어 쓰는 독특한 필체로 배씨가 사망 전에 작성한 사건경합청구서 등과 비교해볼 때 육안으로 확인해 판단될 정도로 동일하다"며 유서조작의혹을 강력 부인했다. 교정국은 또 "신경안정제를 투약한 사실도 없다"며 전주교도소의 공식 입장을 응호했다.

더욱이 배씨의 시신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부검소견서와 유서에 대한 대검과학수사과의 필적감정서에서는 전주교도소측의 주장을 인정함으로써 이 사건은 의혹만 남긴 채 마무리되었다.

한편 전북평화와인권연대에서는 공개질의서를 전주교도소측에 보내어 배재문씨 사망사건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한 답변으로 교도소측은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소견을 끌어와 해명했다.

[참고자료1] 배재문씨 변사사건 일지

- 1998년 11월 19일(목) 항정신성 의약품관리법 위반(항소전)과 강간죄(추가기소전)로 전주지법에서 심리중 판검사에게 욕설과 함께 재판 거부로 퇴정
- 11월 20일(금) 밤 11시 20분 목맨 채 발견됨(교도소주장)
11월 20일 밤 11시 40분 병원 후송했으나 병원에선 이미 사망판정
- 11월 21일(토) 새벽 1시 반 유족 배재준(대전)씨에게 사망통보
11월 21일 오후 1시 반 유족 예수병원 영안실 도착
- 11월 22일(일) 유족과 전봉호 변호사, 전북대 법대 김승환 교수 영안실에서 사체 확인
- 11월 23일(월) 유족 유서 복사본 2장 입수
- 11월 24일(화) 검찰과 교도소측 전남 장성 국과수 서부분소로 사체부검을 위해 수송 했다가 유족측의 반발로 전북대병원으로 되돌아 옴
한동영 검사 오후 3시 예정된 전북대병원 부검시간 보다 30~40분 늦게 도착
유족 비디오 촬영 요구로 검사 화내고 퇴장
이 와중에 의사도 철수했다 뒤늦게 돌아옴
부검 실시할 것 같은 분위기에서 검사와 의사 두 사람 이야기하다 부검팀 갑자기 철수
교도소에서는 유족의 비디오 촬영 때문에 부검이 무산된 것으로 책임을 돌림
- 98년 11월 26일(목) 전남 장성의 국과수 서부분소 부검실시(오전 11시)
박민수 변호사 참석, 유족측 의사 정읍 아산병원 박중조(신경정신과), 차상훈(정형외과), 기자 조영권, 이성각, 김용완 참석
- 부검결과 참고사항
 - (1) 사망시기 조작 가능성 높아져 → 부검 결과 위에 소화되지 않은 음식물 가득차.
즉, 정상적인 상태라면 식사후 1시간도 채 안된 상태에서 사망
 - (2) 자살용 내의 끈에 의혹
내의를 찢어서 만들었기 때문에 끈 어디에든 매듭이 있어야 함
그러나 제출된 끈이나 사진상의 교도소에 현장 보존된 끈에도 매듭이 없다
교도소측은 현장보존된 상태 외에 더 이상 없다고 주장해 더욱 의문
 - (3) 내의 끈 단절부분에 일종의 녹슨 칼 같은 것으로 자른 듯한 흔적
따라서, 배재문씨가 예리한 것을 이용해 끈을 만들 수 있었는지 의문
 - (4) 심장에서 혈액덩어리가 나오지 않고 액상태의 것이 나온 것으로 미뤄 급사 추정
 - (5) 머리 부분에 찰과상 흔적이 있고, 다리에도 족쇄에 의한 상처로 추정되는 흔적이

있지만 어디에도 혈흔이 나타나 있지 않음

또 낭심과 음경 사이(?) 물에 분 듯한 흔적이 있음. 따라서, 사체를 깨끗이 닦은 듯한 느낌이 있음

- (6) 약물부분 : 약물은 하루 정도 지나면 검출이 안돼
따라서, 바륨이 검출되지 않으면 20일 사망했을 가능성 있어
- (7) 보안과장 “사체 목 부위에 내의로 만든 끈이 두 번 감겨 있었다”고 애초 주장했다
가 매듭이 없는데 어떻게 자살이 가능한가라는 질문(?)에 “처음 목격한 교도관이 경황이 없어 자세한 것은 모르겠다”고 말함
- (8) 가슴 이하에서 특이한 외상은 발견되지 않았음
뇌나 장부에서도 출혈 등 외부 충격에 의한 흔적은 없었음
- 11월 30일(월) 전주교도소, 유족측에서 사체 인수 거부하자 사체 가매장
유족은 사체 인수를 거부하면서 “영안실 사체보관비는 우리가 지불하고 부검결과 후 인수하겠다”고 하였으나 교도소측은 사체를 강제로 가매장(유족은 사체가 어디 있는지 모르고 있음)
- 12월 1일(화) 배재준씨와 배재문씨 전처(신현미 : 32, 부산)가 배씨 친필 메모와 편지를 가져와 기자회견
유서조작 의혹을 주 내용으로 TV와 신문, 연합통신 등 언론에 이 사건이 다시 관심 있게 보도됨
- 12월 1일(화) 법무부 교정국, 연합통신 보도와 관련해 정정보도 요구
 - (1) 유서는 모두 4장으로 배재준(큰형), 배재식(둘째형), 배진아(딸), 진아 중학교 교장 앞으로 남겨졌다고 해명
 - (2) 또 배씨의 필체는 약간 비스듬히 쓴 필체로 교도소에서 유서를 조작할 이유가 없다고 해명
 - (3) 약물투여도 한 적이 없고 단 사망 10일전 감기약 투여한 적 있다고 밝힘
- 12월 2일(수) 전주지검 한동영 검사 유서조작과 약물투여 의혹에 대한 언론보도 있자 사건발생 13일만에 전주교도소 독방 현장 방문
- 12월 3일(목) 전주지검 한동영 검사 배재문씨 변사사건 의혹 진상조사 뜻 밝혀
이 자리에 기자 박덕영, 김종하, 김준호, 강찬구, 김용완 참석
 - (1) 유서조작 의혹과 관련 배재문씨가 교도소에서 기록하던 공책을 입수해 유서필체와 정밀감정을 위해 대검찰청에 분석의뢰 밝혀
기자가 검찰이 입수한 공책의 필체 확인 결과 유족이 배씨가 쓴 것이라고 밝힌 편지의 필체와 비슷하고 유서의 필체와는 유사점이 없었음
한검사는 유서의 필체가 정서와 훌륭체일 경우 다를 수도 있다며 공책과 유서의 필체에서 유사한 점이 있는지 확인을 위해 정밀감정을 의뢰할 것이라고 설명
 - (2) 약물투여 부분확인조사 : 당시 사망사실을 유족에게 통보한 직원 가운데 유족에게

- 약물투여 사실을 밝힌 교도관이 있는지 확인작업, 대장과 약물재고량 조사
의무일지에는 배씨에게 약물을 투여한 기록이 없다고 밝힘
- (3) 9월 독방에 수감된 이후 배씨의 행적을 파악하도록 교도소직원에게 지시
- 12월 3일(목) 한동영 검사의 필적감정의뢰 자료에서 배재문씨 바로 위 형인 배재수씨에게 남겨졌다는 유서가 추가로 확인돼 유서가 당초 한 장에서 모두 5장으로 늘어남 법무부 교정국에서는 유서 4장으로 공식발표했었음
유서가 조작된 것이라면 유서가 추가로 발견되더라도 평소 대필해준 내용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글이 길지 않고 짧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예상이 우연인지 아닌지 적중(재수씨 앞으로 남긴 유서의 내용도 학교장이나 딸에게 남겼던 유서만큼 분량이 짧았음)
 - 12월 3일(목) 저녁 배재준씨와 전봉호 변호사 → 12월5일 전주교도소 사건현장 방문협의
 - 12월 5일(토) 배재문씨 사건기록에서 배재문씨 서명 필체와 사건관찰이전 청구서 복사 청구서에 나와있는 황의승 교위 필체를 확인하기 위해 일주일 가량 추적했으나 전입신고서에 있는 필체가 청구서(유서)의 필체와 달라 혐의점 없는 것으로 판단됨
 - 12월 5일(토) 유족과 변호인측 전주교도소 사건현장(기결수 독거실) 방문
취재진 교도소 동행했으나 교도소측의 거부로 현장 보지 못하고 소장만 면담
유족측 전주교도소에 배재문씨 친필 편지와 메모 전달
 - 12월 5일(토) 교도소장 면담(KBS, MBC, JTV, CBS, 전북일보, 연합통신)
유서장수가 계속 다른 것에 대해 → “유서 내용에 검찰과 관련된 내용이 있어 밝히지 못한 것”이라고 해명
유서가 검찰에 압수돼 유서를 유족에게 줄 수 없다는 것과 관련해 → “압수의 의미가 검찰이 갖고 있다는 것인가”라는 질문에 “그런 것만은 아니다”라고 말함(교도소측에서 유서를 계속 갖고 있었음을 뜻함. 실제 유서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이 발부된 적이 없었음)
약물부분에 대해 → 배씨에 대한 기록 검토 결과 1년전 쯤 약물투여사실 있었다고 말함. 그러나 최근에는 없었다고 말함
편지대필에 대해 → 과거에는 있었지만 최근에는 없었다고 말함. 항소장 등 전문분야는 교도관이 대필해주는 경우가 있다고 말함
 - 12월 19일(토) 장성 국과수 김현식 법의학과장과 부검건 통화
사인은 목을 매 숨진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힘. 혈액검사 결과 약물반응 없었다고 밝힘
사망추정시간은 말할 수 없다고 밝힘. 전주교도소측에서 야식을 줬다고 말했기 때문에 야식시간대를 종합해야 사망시간 추정이 가능하다고 밝힘
전주교도소에서 제출한 런닝셔츠 끈 한쪽 부분에서 녹이 검출됐다고 밝힘
부검실시 당일 박민수 변호사가 런닝셔츠 매듭 손상여부에 대해 조사해달라고 했으나 김윤식과장은 그 부분에 대해 조사를 하지 않았다고 밝힘
교도소에 걸려있는 끈과 국과수에 제출된 끈이 다르다는 주장이 있음을 통보하고 국과

- 수의 끈이 런닝셔츠가 맞는지 재차 확인하자 틀림없다고 말함
끈을 자체 폐기할 수 있느냐고 물자 통상 보름 지난 뒤 의뢰인측이 찾아가지 않으면 규정에 따라 폐기한다고 말함
- 12월 23일(수) 전주교도소 박희 교도관을 전주지방법원에서 만나 이야기함
11월 20일 사건 당일 밤 자신이 근무했다고 밝힘
일반적으로 저녁시간대는 신문을 보고 자정무렵에는 대부분 엎드린 채 잠을 잔다고 말함. 자신도 배재문씨 사건과 관련해 진술서를 썼는데 솔직히 적었다고 말함. 관리소홀은 있을지언정 배재문씨를 교도관이 죽일 리는 만무하다고 말함
 - 12월 30일(수) 부검소견서와 필적감정서 입수
부검소견서 : 불완전하고 비전형적인 의사(=교사)로 판단된다는 내용으로 자살 추정
필적감정서 : 유서와 배씨의 공책, 유서 외 배씨 편지봉합엽서 비교 결과 동일필체 결론
전봉호, 박민수, 안호영 변호사, 김승환 교수, 배재준씨 만남
국가상대 배상 청구소송 검토
 - 12월 31(목) 전봉호 변호사 교도소장 통화 유서와 끈 유족에게 돌려 줄 것을 요구
교도소장은 이에 대해 사건이 아직 종결되지 않아 현장을 보존중이라며 임의로 폐기했다가 자신이 수갑한다는 식으로 말하며 종결처리되면 돌려주겠다고 말했다함
안호영 변호사 필적감정서 미비자료 복사
 - 유서 내용을 배씨의 평소 편지와 공책의 내용과 비교했을 때 차이점
 - (1) 생전 딸 진아 중학교 교장 앞으로 보낸 편지에서 진아가 중학교를 잘 마칠 수 있도록 부탁했으나 유서에는 고등학교로 나와 있음
 - (2) 유서에는 큰형 배재준씨가 면회도 안 오고 끝까지 등을 돌리고 있다는 식으로 불만을 잠깐 제기했지만 지난해 10월 1일 국군의 날의 큰형의 면회에 대해 기쁘고 고맙다는 내용의 편지를 보낸 적 있음
 - 99년 1월 7일(목)
배재문씨 사건 교도소 내사 종결 방침에 따라 인권변호사 전봉호, 박민수, 안호영, 전북대 김승환 교수와 함께 향후 대응책 마련
 - (1) 유서 진본과 배씨 수감중 기록한 노트 입수 필적감정 재의뢰
 - (2) 교도소 끈 입수해 국과수에 제출된 끈과 비교
 - (3) 사망시간 추정작업
 - (4) 1, 2, 3항 토대로 국가손배소송 제기
전봉호변호사 교도소 직원과 통화 교도소에 걸려있는 끈을 돌려달라고 요구했으나 교도소직원은 소장과 얘기해서 결정짓겠다며 차후 전화통지하겠다고 밝힘
 - 99년 1월 8일(금)
한동영 검사로부터 내사 종결 확인
부검소견서에 명시된 끈 부분 조사여부 질문했으나 한검사는 조사할 필요성 느끼지 않

는다고 말함

전봉호 변호사, 교도소에서 독방에 걸려있는 끈을 소각했다는 메모 전달받음

○ 99년 1월 9일(토)

안호영 변호사와 교도소 방문해 유서와 공책 등 유품을 인수하려 했으나 교도소측에서 유족의 위임장을 요구해 인수하지 못함

○ 99년 1월 12일(화)

배재준씨 유품 인수, 교도소장 면담

(1) 끈 소각에 대해 문자 밑의 직원들이 자신도 모르게 태워버렸다고 해명

(2) 당시 유족에게 유서를 솔직히 보여주지 못한 것은 유서 내용에 검찰과 관련된 것 이 있었고 유서도 검찰에 압수돼 있었다고 해명

(3) 약물 부분에 대한 의혹은 교도소 직원이 유족에게 사망사실을 통보하면서 언급했던 것이라고 주장하자 교도소 직원 어느 누가 그런 얘기를 하겠느냐며 유족이 꾸며냈을 것이라고 할함

(4) 유서 필체 부분에 대해 자신도 공책과 유서의 필체가 다른 것이 아니냐는 생각을 가졌지만 대검에서 동일한 것으로 나왔지 않느냐고 반문

(5) 교도소에 걸려있던 끈과 국과수에 제출된 끈이 다르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는 것에 대해 변호사가 유족과 밀착되고 있는 이유가 궁금하다는 식으로 반응, 피고가 사망했기 때문에 그것으로 변호인 자격도 없다고 주장

[참고자료2] 전북평화와인권연대가 전주교도소에 보낸 공개질의서

전주교도소 재소자 사망사건 의혹에 관한 공개질의서

지난달(11월) 20일 귀 소에 수감돼 있던 배재문씨(39세)가 목매 자살했다는 귀 소측의 발표에 대해 유족과 여론의 의혹이 날로 커가고 있는 상황에서 사회적 정의와 인권을 모범으로 실천해야 할 귀 소측에 그와 같은 의혹을 철저히 해명하고 불식시킴과 아울러 진실을 규명해야 할 책임이 있음을 상기시켜 드리며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질의에 조속히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 유서관련의혹 - 11월 21일 서무계장이 유서가 아닌 메모형식의 것이 여러 장이었다고 했는데 이 메모들의 행방을 밝혀 주십시오. 또 11월 21일에는 유서가 1장이라고 했다가 23일에는 2장, 다시 12월 1일에는 4장, 2일에는 5장으로 매번 유서의 장수를 달리하여 발표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또한 귀 소에서 유족에게 복사해준 유서 두통(딸과 딸이 다니는 중학교 교장 앞) 외에 배재준, 재수, 재식 등 형들에게 보낸 유서를 즉시 공개하지 않

는 정당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2. 사망시점에 관한 의혹 - 귀 소측에서는 배재문씨가 11월 20일 오후 11시 20분경 목매 있는 것을 발견하고 병원에 후송했으며 이때 맥박이 있고 인공호흡등 응급조치를 했다고 말했으나 당시 시신을 검안한 예수병원 당직 의사는 “죽은지 장시간됐다”고 말했고 그 증거로 체온이 싸늘하고 동공반사가 없고 동공이 모두 풀린 상태였으며 손가락 두 개가 들어갈 만큼 항문이 열려있었다는 점 등을 들었습니다. 또 귀 소측에서는 배씨가 목매 숨진 증거로 변을 봤다고 하고 옷에도 변이 물어 있는 상태였으나 이는 후송중에도 살아있었다는 주장과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또한 11월 21일 새벽 4시경 배재문씨의 큰형 재준씨에게 배씨 사망소식을 통보하면서 교도관이 “법정에서 판사와 검사를 못믿겠다며 재판을 거부하고 소란을 피워 교도소에서도 홍분을 가라앉히지 못해 주사와 함께 약물을 투여했는데 그날 그렇게 됐다”고 했습니다. 이에 따라 약물투여에 의한 쇼크사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해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진정제 주사 의혹 - 귀 소측에서는 공식적으로 부인하고 있으나 위 2항과 같이 재준씨가 교도관으로부터 ‘진정제를 주사했다’고 들었으며 다음날인 22일 전북대 법대 김승환 교수가 예수병원에서 보안계장으로부터 ‘약물과 주사 투여 사실이 있다’고 시인받은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해명을 바랍니다.

4. 배씨가 자살에 이용했다는 찢어진 내의 어디에도 목을 매는 데 이용한 매듭이 없습니다(국과수 사진, 사건현장 등). 더구나 귀 소측에서는 그 외에 그 내의의 나머지 부분은 없다고 했습니다. 또 내의 끈 단절부분은 예리한 도구로 자른 듯한 혼적을 남기고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또한 애초 보안과장은 사체 목부위에 내의로 만든 끈이 두 번 감겨 있었다고 주장했는데 그렇다면 그 상태에서 어떻게 자살이 가능한지 많은 사람들이 의혹을 품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해명 바랍니다.

이외에도 여러 가지 의혹이 있으나 생략하기로 하고, 다만 유족들이 많은 의심을 품고 사건의 진실이 밝혀지기를 요구할 따름이므로 귀 소측에서는 이를 깊이 생각하셔서 유족들에게 여한이 없도록 진실규명에 최선을 다해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위 네 가지 의혹에 대하여 조속히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그렇게 함으로써 진실규명에 협조함은 물론 재소자에 대한 부당한 처우가 있어왔다는 의혹을 불식시키지 못해왔던 그동안의 자세에도 전향적인 변화가 있기를 기원합니다.

1998. 12. 7

전북평화와인권연대 공동대표 문규현·김승환(직인생략)

[참고자료3] 공개질의에 대한 전주교도소의 답변서

전 주 교 도 소

우 560-280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 3가99/ ☎(0652)224-4361~6/ 전송 221-3327
보 안 과 괴 장 김양태 담당자 구지서

문서번호 : 보안 61490-593

시행일자 : '99. 1. 27. (수)

수 신 : 전북평화와 인권연대

참. 조 : 광동대표 문규현, 김승환

선	결	지
접	일자	시
접	시간	결
수	번호	재
처	리	공
당	자	활

제 목 : 공개질의서에 대한 답변내용 통보

1. 공개질의서(재소자 사망사건 의혹 해명요구 98.12. 7)와 관련입니다

2. 이와 관련하여 불임과 같이 답변내용을 통보합니다

불 임 : 공개질의서에 대한 답변내용 1부. 끝.

전 주 교 도 소



공개질의서에 대한 답변내용

1. 유서관련의혹에 대하여

- 자살자가 작성한 유서형식의 편지는 총 5통이었으며 위 유서들은 자살자 본인의 거실내에서 발견된 것으로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부검의뢰시 사용할 사진촬영시 (98.11.23)와 검사의 현장확인시(98.12. 2) 순차적으로 발견되었음
- 유서는 사고현장의 증거보존 차원에서 검찰청에 모두 제출하였으며 유족이 타살이라는 의혹을 강하게 제기하였기 때문에 이의 반증으로 우선 복사본 2통을 유족에게 공개한 것임.
- 유서가 조작되었다거나 대필로 작성되었다고 주장하는 부분에 대한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유족측이 임의로 제출한 편지(자살자 작성, 92년) 1장과 메모지(자살자 작성) 1장 및 사고현장 거실내에서 발견된 유서 5통과 노트 1권은 98.12. 7. 내검 환청에 필적간정 의뢰하였으며, 그결과 98.12.29 동일인의 필적으로 판단된다는 문서감정 결과를 통보받았음
- 필적감정 의뢰시 대검찰청에 제출하였던 유서 5통, 노트 1권, 유족이 제출한 편지 1장과 메모지 1장은 유족측의 요청에 따라 99. 1.12. 유족측에 전해주었음

2. 사망시점에 관한 의혹에 대하여

- 98.11.20. 23:20경 자살자를 발견하였을 당시에 미약하나마 맥박이 뛰고 있었으나 인공호흡등 응급조치와 함께 병원에 긴급후송하였으나 병원도착과 함께 사망하였으며 동일 23:40경 교사(목매어 자살)로 인한 호흡 부전으로 사망하였다는 검안소견을 받은 사실이 있고,
- '98.12.17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부검감정 결과도 동일한 소견이었음

3. 진정제 주사 의혹에 대하여

- 자살자는 98.11.19 범정소판으로 재판장에 의해 퇴정된 후 귀소하여 당직단장과의 면담시 순간적인 흥분으로 재판장에서 소란행위를 하였으나 차후보는 분미스린 행위가 없을 것임을 다짐하고 마음의 안정을 되찾은 후에 본래의 기실에 입석하였으며 그후 동정도 평소와 달리 없는 정상적인 생활을 하였음
- 당시 진정제등의 약물을 사용한 사실이 없고 최근 1년간 투약현황을 살펴봐도 소화제, 제산제, 감기약등은 간혹 복용한 적은 있으나 진정제를 주사하거나 투약한

사실은 없었음

- 진정세 주사여부 및 약물투약에 의한 쇼크사 의혹제기에 대하여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부검 및 정밀감정 의뢰시 이를 밝혀줄 것을 의뢰한 결과, 진정제동의 약물 및 독물, 마약성분 등은 검출되지 않았다는 정밀감정 결과를 통보받았음

4. 목에 자살한 끈과 관련된 내용에 대하여

- 목을 매는데 사용했던 끈 3부분 중 2부분은 이미 98.11.26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정밀감정의뢰시 유족과 변호인 입회하에 확인후 위 연구소에 제출하였으며 나머지 1부분은 사고 현장에 매어있었고 이를 유족과 변호인도 현장에서 실제 확인 한바 있음
- 목을 매어 자살한 끈의 단절부분이 예리하게 잘린 것은 사무용칼로 절단한 것 방법 때문임
- 자살방법과 형태에 관련된 사항들은 이미 유족과 변호인, 유족측의 부검입회 초빙의사등에 의해 부검입회시와 국립과학수사연구소장 및 부검의사진의 설명시에 확인된바 있으며
- 98.12.17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부검감정 결과 사망자는 의사(목을 매어 자살)로 판단된다는 간정 결과를 통보받았음

5. 맷용밖

당소에서는 사고발생후 처리과정동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수용자 자살사고 이후 장례절차와 부검장소 지정 및 입회자 선정, 사고현장 확인, 필자간정 의뢰등을 포함한 제반 사고 처리에 있어 한점의 의혹이 없도록 유족측과 변호인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여 공개적인 상태에서 공정한 사고처리 및 진실규명을 위해 적법절차에 따라 성실히 노력하였음을 밝힙니다. 끝.

[참고자료4] 답변에 대한 전북평화와인권연대의 성명서

전주교도소는 배재문씨 의문사 의혹을 심화시키고 있다.

1. 전북평화와인권연대(공동대표 文奎鉉, 金承煥)가 지난해 12월 7일 전주교도소 재소자 배재문씨(사망 당시 39세) 의문사 의혹을 공개질의하자 전주교도소가 지난달 27일 공식 답변해왔다.

2. 그러나 전북평화와인권연대는 전주교도소측의 답변내용을 신뢰할 수 없으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전주교도소는 지난해 12월 17일 국립과학수사연구소가 사체부검감정서를 통해 '끈으로 인한 목부위 혼적이 일반적인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끈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명시한 사실을 확인하고도 이 끈을 불태워 없앰으로써, 이 사건에 관한 중요한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그와 같은 방법을 선택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을 놓고 있다. 더욱이 전주교도소측은 숨진 배씨의 담당 변호인이 전주교도소장과 직접 통화하여 교도소에서 보관하고 있는 끈의 법적인 소유권이 배씨의 유족에게 있음을 상기시키고 이를 넘겨 달라고 요구하고 소장이 그렇게 할 것을 약속한 직후 끈을 불태워 없앴음이 이를 인수하려 교도소를 방문한 변호인을 통해 확인돼 그와 같은 의혹을 가중시키고 있다.

둘째, 앞서 국립과학수사연구소는 부검감정서를 통해 '현장에서의 사체 상황과 그 장소의 상태'에 대한 조사가 요구된다고 명시한 바 있다. 이의 조사에 따라 부검결과가 타살로 바뀔 수 있는 여지를 남긴 것이다. 전주교도소는 사건 당시 유족과 변호인에게 이를 즉각 공개하지 않음으로써 결국 정확한 진상규명이 이루어지는 데 협조하지 않은 것이다.

셋째,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부검 당시 사체의 위에서 검출된 음식물이 거의 소화되지 않은 상태로 있었다는 점도 여전히 이 사건의 의혹이다. 교도소에서 저녁식사 시간은 보통 4시 30분에서 5시 30분 사이이다. 따라서 사체의 위에서 발견된 음식물의 상태는 배씨 사망시간이 저녁식사 직후라는 추정을 뒷받침한다. 그러나 전주교도소측은 배씨가 밤 11시 40분경 숨졌다라는 상반된 주장을 하고 있다.

넷째, 전주교도소측의 이번 답변서는 전주지검이 이 사건에 대한 내사를 종결한 지난달 초로부터 20일 가량이나 지난 뒤 나온 것인데다 내용 또한 국립과학수사연구소와 대검찰청 과학수사과의 보고서를 요약하거나 교도소측의 기준 주장을 반복한 것에 불과해 우리

는 이를 액면 그대로 신뢰할 수 없다.

3. 전북평화와인권연대는 위와 같은 이유로 전주교도소측의 답변내용을 신뢰할 수 없다고 보고 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방법을 강구해 나가기로 했다.

1999. 2. 2

전북평화와인권연대(공동대표 문규현·김승환) 직인생략

[6] 정보기관의 민간인 사찰

경찰이 안기부 지시에 따라 민간인과 사회단체들에 대한 인물 및 단체 존안카드를 체계적으로 작성, 보관해오고 있는 사실이 98년 12월 드러났다. 전북시민운동연합, 전북평화와 인권연대 등 전북지역의 7개 사회단체들은 이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전북지방경찰청장에게 존안카드의 존재 여부와 존재할 경우 공개를 요구하는 행정정보공개청구서를 보냈다. 경찰은 비공개결정 통지를 보내왔는데 내용은 ①자료를 보관하고 있다는 점과 ②그러나 비밀로 보관하는 자료이기 때문에 공개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사회단체들은 즉각 행정심판을 청구하고 행정소송을 냈다. 소송에 대한 재판은 99년 3월경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사회단체들은 98년 12월 15일 일간지 <한겨레>가 경찰의 존안카드 작성 사실을 보도한 뒤 12월 21일 기자회견을 갖고 그 직후 지방경찰청에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시켰다. 정보공개를 청구한 단체는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전북시민운동연합, 민주노총전북본부, 인권운동젊은연대, 천주교정의구현전주교구사제단, 전북인권선교협의회, 군산미군기지우리땅찾기시민모임 등 모두 7개 단체이다. 청구단체들은 단체의 임원 및 구성원 41명에 대한 단체자료와 인물존안자료, 기타 동향파악을 위해 작성한 일체의 자료에 대한 공개를 요구했다. 전북지방경찰청이 정보공개청구에 '비공개결정'으로 응답하자 단체들은 99년 1월 26일 전북지방경찰청 직속 상급기관의 장인 행정자치부장관에게 행정심판을 청구하고 행정소송을 걸었다. 청구인들은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비공개 사유로 경찰이 '청구인이 공개를 청구한 자료는 경찰청에서 비밀로 보관하는 것'이라며 존안카드 보관 사실을 시인하고 있으면서도 뻔뻔스럽게 그 공개를 거부하고 있는 데 대해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정보공개청구를 거부한 것은 헌법상 보장돼 있는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하는 위헌, 위법의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소장에서 이들은 "경찰이 범죄예방 및 수사목적으로 범죄와 관련된 정보, 기타 치안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그 권한범위 내의 업무활동이라 하겠지만 구체적 범죄혐의 없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에 대하여 범죄와 직접적 관련이 없는 개인의 신상에 관한 광범위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수집하는 행위는 국가권력을 남용하여 국민을 감시하는 행위로서 명백한 위법행위"라고 지적했다.

청구인들은 또한 "피청구인의 비공개처분은 피청구인이 그 근거로 들고 있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1호의 비공개대상정보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일 뿐만 아니라 비공개처분에 이유를 명시하지 않은 하자있는 처분으로서 위법한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에 앞서 민변, 인권운동사랑방 등 단체들이 경찰청장에게 정보공개청구를 요구했고 그 뒤 행정소송을 낸 바 있다.

[7] 주한미군 - 군산미군기지 우리땅 찾기

98년은 군산미군기지와 관련된 각종 인권침해에 대해 전북지역 시민사회단체의 공동의 요구를 정립했던 해이다. '군산공항 사용료 인상반대' 투쟁을 기점으로 전북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은 계속되는 미군문제에 조직적이고 지속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군산미군기지 우리땅 찾기 시민모임'(이하 시민모임)을 결성했다. 시민모임은 매주 금요일 12시에 군산미군기지 정문 앞에서 정기적인 집회를 가졌다.

98년 한해동안 군산지역에서 많은 미군범죄가 일어났는데 시민모임의 정기적인 집회와 활동으로 지역주민들이 미군범죄 등 미군문제에 예전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모습을 보였다. 결국 시민모임의 활동은 숨죽이며 살아오던 지역주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자기 권리를 찾고자하는 의지를 심어준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98년 한해에도 예년과 다름없이 많은 미군범죄가 일어났다. 이 때문에 시민모임의 활동도 발생한 미군범죄에 대한 처벌과 근절에 초점이 맞춰졌다.

1. 군산민항사용료 인상반대 투쟁을 시작으로

천주교정의구현전주교구사제단과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전북도민과 군산시민은 97년 8월부터 군산미군기지 사용에 관한 협정(MOA) 개정에 있어 미군측 공항사용료 300% 인상 요구안의 부당함을 주장해 왔다.

즉, 미군측의 인상안은 1)한국민의 국방을 위해 무기한 무상으로 임대해 준 땅과 시설물에 대한 이운행위이며 2)지난 협정의 근간을 이루는 미공군규정(AFI 10-1001)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합의 내용을 일방적으로 폐기하는 천파운드당 계산법을 적용하는 것과 이로 인한 300%의 급격한 인상(환율급등으로 실제 600% 인상)을 요구함은 옳지 않다라는 것이었다. 또한 한국정부는 매해 \$4억(98년 3억 9천 9백만 달러) 가까운 엄청난 금액을 주둔군지원경비란 명목으로 미군측에 지불해 왔다. 이 비용은 기지시설 유지·보수비로 지출되기에 민항관련 활주로 사용료, 활주로 보수비와 주둔군지원경비는 중복된다는 것이다.

한반도의 분단상황 하에서 한국정부는 국가안보를 목적으로 전국 1억여평의 땅을 미군에게 무상으로 무기한 임대해 주었다. 이 한국 땅에 대해 한국국민이 거꾸로 사용료를 내는 것은 치욕적인 현실이 아닐 수 없다. 이의 개선을 위한 서명운동과 청원운동, 그리고 20주

동안 이어지는 금요시위, 4차례의 도민집회 등을 통해 전북도민과 시민단체는 민족자주권 회복을 위해 노력했다.

결과적으로 원천적인 인상반대의 결과는 얻지 못했지만 기존의 1천파운드당 \$0.6에서 협정만료일 2003년까지 \$1.7의 점진적 인상합의안은 미군측의 부당한 300% 인상안 철회를 위한 시민모임과 전북도민의 단합된 노력에 의한 성과라 할 수 있다.

군산미군기지 사용에 관한 협정(MOA)은 1)한국 땅을 무기한 무상으로 쓰고 있는 미군이 한국민에게 사용료를 받는 부당함 2)한국정부가 지원하는 군산미군기지 주둔군지원경비와 사용내역 비공개 3)미군이 주장하는 활주로 인상안의 법적인 근거와 산출내역을 비공개 4)한국 내 영토에서 미국 내의 규정(AIP 10-1101)을 강요하는 미군측의 폐단과 오만 5)불평등하고 비합리적인 군산미군기지 사용에 관한 협정(MOA)과 한미협정 등 부당하고 불평등한 문제점을 복합적으로 안고 있다. 이에 전북도민모임은 군산시에 미군 쓰레기처리비용(수거-매립-인건비-장비사용, 감가상각비-침출수관리비 중 수거매립 비용만을 받고 있는 부당함)과 농업용수비용(저수지에서 끌어간 농업용수에 대한 사용료가 아닌 정수한 농업용수비용만을 내는 부당함) 인상을 군산시장 면담을 통해 공식적으로 촉구했다.

98년 5월 8일 '군산미군기지 공항사용료 인상안 철회를 위한 전북도민모임'은 주한미군이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에 지속적이고 조직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군산미군기지 우리땅 찾기 시민모임(상임대표 문정현신부)'으로 전환했다. 시민모임은 1)군산미군기지 사용에 관한 협정 폐기 2)군산공항 반환운동 3)군사군비 축소운동 4)미군을 상대로 군산시와 함께 미군기지 지역주민의 소음피해 소송운동 5)환경오염 감시 6)공여지 재산권 보호 7)각종 위법행위 고발 8)미군범죄 근절과 구속수사 촉구운동 9)불평등한 한미협정 개정운동 등을 주요과제로 천명했다.

2. 군산 주한미군범죄

2-1. 주요 사건사고

1) 위조지폐 사건

- 사건일자 : 98년 1월초-3월말
- 가해자 : 데일.엘.허프(Dale L Huff, 25세)
- 내용 : 1월에서 3월초 컬러프린터와 스캐너를 이용해 1만원권 49장, 20달러짜리 23장을 총 3회에 걸쳐 쓰레기장에 투기한 사건
- 투쟁개요 : 3월 5일 '공항사용료 인상반대 및 미군기지 위조지폐범죄 수사촉구 결의대회'

오후 2시 미군기지 앞. 이후 계속된 금요집회

- 사건처리 : 10월 22일 오전 10시 전주지법 제3형사합의부(재판장 : 방극성부장판사)는 지난 98년 1월에서 3월까지 원화와 달러를 위조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군산 미공군 전투비행단 통신대 병장 테일.엘.허프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죄(통화위조)를 적용해 징역 5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2) 이영선 목사 교통사고

- 사건일자 : 6월 21일
- 피해자 : 이영선(목사)
- 가해자 : 이 름 - 크로커 베리(CROKER BERRY)
 - 계급 - 중사
 - 소속 - 31특수작전대대
- 장소 : 나운동 극동주유소 사거리 인근 침례교회 뒤 골목사거리

- 사고경위 : 피해자는 5월 14일 새벽 6시 30분경 위 장소에서 오토바이로 신문을 배달하던 도중 휴식을 취하고 이동 중으로 판단되는 미군트럭에 의해 뒤쪽을 맞쳐 1차 소견 5주의 진단결과를 받음. 입원 치료. 미군트럭은 이영선 목사가 타고 있던 오토바이를 7~8미터 정도 밀고 가서 정지했으며 피해자가 실신 후 30분 동안 아무런 대책도 취하지 않았음. 지나가던 택시에 의해 경찰에 알려져 경찰과 현병조사팀이 동시에 출동, 사건은 접수되고 법무부로 넘어감. 피해자 이영선 목사는 30분 동안 응급조치를 취하지 않은(사고 후 깨어날 때까지 40~50명의 미군은 주위에 서서 지켜보고만 있었음) 미군의 태도에 모멸감을 느낄 정도였으며, 이러한 일방적 과실을 저질러 놓고도 책임을 지지 않으려는 미군 측의 모습에 강한 불만을 보였다. 우리 사법당국이 주도권을 가지고 사고를 처리하고 가해자 또한 어떠한 형식으로라도 처벌되길 바라고 있다(한미행협은 미군의 공무중 사고에 대한 배상 책임을 한국정부가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 투쟁경과 : 시민모임은 이번 사건이 가해자는 미군이고 이에 대한 배상책임은 한국에 있다는 것에 주목하고 배상 시기도 1년이 지나야 하는 등 자국민 피해자에 절대 불리하게 작용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미군당국에 치료비 전액 배상을 요구하고 한미행협을 개정할 것을 요구하는 집회를 계속 벌일 계획이다.

- 현재 : 국가배상 신청에서 승소하여 800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받는 데 성공했으나 시민모임은 이를 한국정부가 아닌 가해당사자인 미군측이 지불할 것을 촉구하고 있음.

3) 하제마을 오발 유탄사고

- 사건일자 : 1998년 9월 10일

- 사고장소 : 옥서면 하제마을
- 사고경위 : 미공군부대의 유탄발사 사격도중 파편이 인근마을의 조립식건물 한쪽면을 관통
- 투쟁경과 : 인근마을 주민의 탄원서 제출, 미군범죄에 대한 총체적 접근 시도 등
- 현재 : 국가배상 신청 계류중

4) 그 외 : 처벌되지 않은 대표적 미군범죄 사례

① 8월 경운기를 타고 가던 옥서면 지역 주민이 미군이 운전하던 차에 치어 1명 사망 1명 중상을 입은 사고, ② 아메리칸 환전소 여주인 피살사건은 초기 단계에서 미군의 소행으로 보았으나 그후 미궁에 빠짐. 이는 사건 발생 초기에 구속수사가 이뤄지지 않음으로 인해 처벌되지 못한 대표적인 사례이다.

2-2. 미군범죄의 발생 원인

미군범죄는 불평등한 한미관계라는 본질적인 문제에서 비롯된다. 즉 미군범죄는 주둔 초기부터 형성된 미군들의 우월의식과 점령군적인 태도, 굴욕적인 한국정부의 대응, 불평등한 한미주둔군지위협정이라는 3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한다.

1) 한국정부와 수사기관의 문제

국내의 흉악범들이 법정 최고형을 받는 것과 대조적으로 미군들은 우방국 군인이라는 명분 아래 상대적으로 가벼운 처벌을 받아왔다.

이것은 미군이 한국군의 전시 군작전 지휘권을 가지고 있는 문제와 연관이 깊다. 미국이 한국의 정치, 군사, 경제, 문화 등 전 영역에 걸쳐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미군범죄 피해자들이 제일 고통스럽게 호소하는 것은 미군범죄를 대하는 한국 수사 기관의 소극적인 자세 문제다. 실제로 일선 경찰에서는 미군 범죄가 발생하면 공정한 수사를 하기보다 되도록 은폐, 축소시키려는 경향이 많다. 이는 은폐, 축소라는 직접적인 표현 보다는 의지자체가 부족하다는 것이 적절하다.

2) 불평등한 한미주둔군지위협정(한미SOFA)

현행 협정 중 한미간 개정협상의 쟁점이 되었던 제22조 형사관할권 일부 조항을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 ▷ 한국에 전속관할권이 보장되어 있는 사건의 경우에도 미국측이 요청하면 한국은 전속관할권을 포기할 수 있다.

'합의의사록 제22조 제2항에 관하여'

대한민국은, 합중국 당국이 적당한 경우에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군속 및 그들의 가족에 대하여 과할 수 있는 행정적 및 징계적 제재의 유효성을 인정하여, 합중국 군당국의 요청에 의하여 제2항에 따라 재판권을 행사할 권리를 포기할 수 있다.

미군범죄에 대한 형사관할권은 한미 어느 일방 당사국이 배타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전속적 관할권'과 한미 양국이 다같이 행사할 수 있는 '경합적 관할권'으로 나뉜다. 그런데 이 조항에 따르면 한국측에 전속관할권이 보장되어 있는 경우에도 미국이 요청하면 한국이 포기하도록 되어 있다. 한국의 사법권이 언제든지 포기될 수 있는 것이다.

- ▷ 형이 확정되어 한국 교도소에 수감중인 미군도 언제든지 미군측에 인계될 수 있다.

본협정 제22조 7항 (나)

대한민국 당국은 합중국 군당국이 본조의 규정에 따라 선고한 자유형을 대한민국 영역안에서 집행함에 있어서 합중국 군당국으로부터 조력을 요청하면 이 요청에 대하여 호의적으로 고려를 하여야 한다. 대한민국 당국은 또한 대한민국 법원이 선고한 구금형에 복역하고 있는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군속 또는 그들의 가족의 구금 인도를 합중국 당국이 요청하면, 이 요청에 대하여 호의적 고려를 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구금이 합중국 군당국에 인도된 경우에는, 합중국은 구금형의 복역이 종료되거나 또는 이러한 구금으로부터의 석방이 대한민국 관계 당국의 승인을 받을 때까지 합중국의 적당한 구금 시설안에서 그 개인의 구금을 계속할 의무를 가진다.

이러한 경우에, 합중국 당국은 대한민국 당국에 관계 정보를 정규적으로 제공하여야 하며, 또한 대한민국 정부 대표는 대한민국 법원이 선고한 형을 합중국과의 구금시설 안에서 복역하고 있는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군속 또는 가족과 접견할 권리를 가진다.

대한민국 수감시설에서 복역하고 있는 미군을 굳이 미군측의 적당한 구금 시설안에서 구금할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조항이다. 미군 범죄자의 신병인도는 한국인 피해자의 법감정에도 어긋나며 미군기지 안을 미군들의 인가없이 출입할 수 없는 현실을 감안할 때 위의 조항은 미군측에만 유리하게 적용될 소지가 높다. 특히 '합중국의 적당한 구금시설'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곳이지 명시되어 있지 않아 더욱 문제가 된다.

- ▷ 범죄 미군의 구속수사는 불가하며 모든 재판 절차가 끝난 후 구속 수감된다

본협정 제22조 5항 (다)

대한민국이 재판권을 행사할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군속 또는 그들의 가족인 피의자 구금은, 그 피의자가 합중국 군당국의 수중에 있는 경우에는, 모든 재판 절차가 종결되고 또한 대한민국 당국이 구금을 요청할 때까지, 합중국 군당국이 계속 이를 행한다. 그 피의자가 대한민국 수중에 있는 경우에는, 그 피의자는, 요청이 있으면, 합중국 군당국에 인도되어야 하며 모든 재판 절차가 종결되고 또한 대한민국 당국이 구금을 요청할 때까지, 합중국 군당국이 계속 구금한다. 피의자가 합중국 군당국의 구금하에 있는 경우에는, 합중국 군당국은 어느 때든지 대한민국 당국에 구금을 인도할 수 있으며, 또한 특정 사건에 있어서 대한민국 당국이 행할 수 있는 구금 인도의 요청에 대하여 호의적 고려를 하여야 한다.

한국이 재판권을 행사하는 경우, 협정대상자가 미군당국의 수중에 있는 경우에는 모든 재판절차가 종결될 때까지 미군당국이 구금을 행하고 재판절차가 종결된 후에야 대한민국 당국이 구금을 요청할 수 있다. 반면 피의자가 대한민국 수중에 있는 경우는 합중국 군당국의 요청이 있으면 합중국 군당국에 인도되도록 하고 있다.

한국이 요청할 경우에는 미군당국은 '인도할 수 있고' 특정 사건에 대한 구금인도 요청에 대해 호의적 고려를 하도록 하여, 인도를 안해도 무방하다. 반면, 피의자가 우리 수중에 있는 경우에는 미군측이 요청하면 우리의 의사나 사건의 중요성을 불문하고 즉시 인도하도록 강제성을 띠고 있다. 이는 우리의 주권을 크게 침해하는 불평등한 내용이다. 한국이 1차적 재판권을 가진 경우에도 피의자를 미군당국에 구금토록 하고 있어 피의자의 자유로운 조사, 접견이 보장되지 않아 한국 수사당국과 법원이 수사와 증거수집에 커다란 제약을 받고 있다. 미군피의자가 영내에 숨어버리는 경우에 그의 신병을 인도받을 수 있는 방안도 마련되어 있지 않아 재판권 행사에 장애가 된다.

- ▷ 주한미군은 재판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

합의의사록 제9항에 관하여

... 대한민국 당국에 의하여 소추된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군속 또는 가족은 다음의 권리를 가진다.

(차) 심판에 출석하거나 자신의 변호에 있어서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부적당한 때에는 심판에 출석하도록 요청받지 않을 권리,
(카) 적절한 군복이나 민간복으로 수갑을 채우지 아니한 것을 포함하여 합중국 군대의 위신과 합당하는 조건이 아니면 심판받지 아니하는 권리,

대한민국의 사법권을 불신하고 재판을 거부할 권리를 미군에게 부여하고 있다. 이는 대한

민국의 사법권을 무시하는 처사이다. 미군부대내에서 한국 택시 운전기사가 미군들과 시비가 있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명확한 수사나 물증도 없이 함부로 수감채우고 연행하는 미군들의 태도와 크게 대조를 이루고 있다.

더욱이 '합중국 군대의 위신과 합당하는 조건'이 구체적이지 않아 악용될 소지가 높다.

한미주둔군지위협정의 문제는 제22조에 그치지 않는다. 제5조에는 미군기지와 시설의 무상사용을 규정하고 있고, 제4조에는 미군기지 반환시 원상태로 회복해야 할 의무를 지지 않는다고 명시함으로써 미군기지 환경오염의 책임을 면제받는다. 이밖에도 미군범죄 피해자의 배상신청을 가로막는 제23조 민사청구권, 한국인 노무자의 노동권을 제약한 제17조 노무조항 등 미군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내용이 대부분이다. 한미주둔군지위협정은 한마디로 미군에게 다양한 특혜를 제공하기 위한 합법적인 장치라 할 수 있다.

사건이 생길 때마다 미군들이 가장 많이 하는 얘기가 바로 '법대로 하자'는 말이다. 한국에 불리한 협정이기에 미군에게 크게 손해날 일이 없다는 것을 너무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3) 한미주둔군지위협정 제23조 청구권 조항의 문제점과 개정방향

(가) 규정내용

본 협정 제23조 5항에는 공무집행중에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이나 고용원이 대한민국정부 이외의 제3자에게 손해를 가하였을 때는 대한민국 군인이 공무집행중 손해를 가한 경우의 배상절차에 따라 심사하여 해결하거나 재판을 통해 결정된 배상금을 직접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피해자가 우리나라를 상대로 국가배상법규정에 의해 국가배상을 신청하거나 우리나라를 피고로 하여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피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미군이 점유, 소유 또는 관리하는 토지의 공작물과 기타 시설, 또는 물건의 설치나 관리의 하자로 인하여 손해를 가한 경우에도 국가배상법절차에 따라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다.(민사특별법 제2조 2항)

또한 5항 (마)에는 손해의 책임 소재에 따라 아래와 같이 나뉘어 명시되어 있다.

본 협정 제23조 제 5항(마)

- 1) 합중국만이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재정되어 합의되거나 또는 재판에 의하여 결정된 금액은 대한민국이 그의 25%, 합중국이 그의 75%를 부담하는 비율로 이를 분담한다.
- 2) 대한민국과 합중국이 손해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재결되어 합의되거나 또는 재판에 의하여 결정된 금액은 양당국이 균등히 이를 분담한다. 손해가 대한민국 군대나 합중국 군대에 의하여 일어나고 그 손해를 이들 군대의 어느 일방 또는 쌍방의 책임으로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정되어 합의되거나 또는 재판에 의하여 결정된 금액은, 대한민국과 합중국이 균등히 이를 분담한다.

(나) 문제점과 개정방향

① 우선 공무집행중에 발생한 손해라 해도 우리나라가 아무런 책임이 없는데 배상금의 25%를 부담하도록 한 규정은 문제가 있다.

② 손해에 대해서 대한민국과 미국의 공동책임이거나 책임소재가 불분명할 경우에도 무조건 균등분담해야 한다는 규정도 문제이다. 이 조항도 위와 마찬가지로 미군이 이남의 방위를 위해서 주둔한다는 가정 아래 만들어진 것이다.

이 규정 때문에 손해가 발생하면 일방책임이거나 주된 책임을 부담하는 쪽이 어떻게든 상대방의 책임을 끄집어내려 할 것이고 손해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책임이 있으면 배상액을 균등분담해야 하는 불합리한 결과가 되어 버린다. 한·미간의 역학 관계에 비추어 볼 때 이 규정은 주로 미국에 의해 악용될 위험성이 있다.

③ 공무집행중에 미군이나 고용원이 가한 손해는 일단 국가배상심의회를 통해 한국이 책임을 지기 때문에 배상금을 확실히 지급받을 수 있는 반면에 실제 배상이 이루어지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 (피해자가 만족할 만한 액수의 배상금이 나온다는 뜻은 아니다) 그동안 피해자는 자신의 돈으로 치료비 등을 부담해야 하는데 피해자로서는 나중에 가서 결국 돈을 받게 된다 할지라도 당장 많은 돈을 마련해야 하는 어려움을 겪게 된다.

따라서 치료비만이라도 미리 지급받을 수 있는 것이 바람직하나 현실적으로 전혀 그렇지 않다. 국가배상법에 긴급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치료비의 일부를 사전에 지급할 수 있다 는 규정이 있으나 실제로 이 규정에 따라 치료비가 지급된 예가 없어 있으나마나한 규정이 되고 있다.

따라서 공무집행중에 가한 손해에 대해서도 치료비나 긴급히 필요한 비용을 미리 지급하도록 하는 규정을 둘 필요가 있다. 공무와 관계없이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미군측이 치료비를 미리 지급한 예가 있다.(93년 4월부터 미군범죄 신고센터를 운영한 필자의 경험에 의하면 미군들은 여론이 미군측에 불리하게 조성될 경우 치료비를 선지급하여 사건의 조기진화(?)에 나선다. 그러나 아무리 피해자의 상황이 어려워도 여론이 잠잠할 때에는 법대로 하라는 말만 반복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그것은 관례적으로 그렇게 지급한 것이지 한미행정협정에 관계규정이 있어서 선지급을 한 것은 아니다. 즉 이러한 선지급 관행을 공무집행 중 또는 공무집행과 관계없는 손해를 구별하지 않고 한미주둔군지위협정에 규정해야 한다. 현재 미군 범죄 피해자들의 가장 큰 고통은 이러한 부분이다.

④ 대부분 공무중의 사고로서 빈발하고 있는 미군차량의 교통사고 사건과 관련하여 미군 차량과 미군이나 고용원이 개인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모든 차량에 대해서 보험에 들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다. 보험에 가입된 차량으로 인해 사고가 났을 경우에 보험회사에서 치료비 지급 보증을 해주므로 당장 돈을 마련하기 어려운 피해자도 치료를 받을 수 있게된다.

또한 설사 공무집행과 관계없이 발생한 교통사고라 하더라도 치료비 보증은 물론 보험회사로부터 배상금을 확실히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2-3. 미군범죄 근절을 위하여

가해자는 죄에 합당한 처벌을, 피해자는 배상을 정확히 받아야 한다. 가해자가 처벌받지 않고 피해자는 배상은커녕 치료비 부담으로 이중 삼중의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는 것이 구조화되어 있다면 이는 명백한 인권 침해이다. 해방 이후 10만건이 넘는 범죄가 발생하였다는 것은 10만명이 넘는 가해자와 피해자가 양산되었음을 뜻한다.

그들은 모두 어떻게 되었을까? 단언하건대 가해자들이 철저히 단죄되고 피해자가 합당한 배상을 받을 수 있었다면 10만건이 넘는 범죄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미군범죄 최소화를 위해서 아래와 같은 노력이 시급히 요구된다.

1) 한미주둔군지위협정의 전면적 개정

일반적으로 국제법상 외국군대는 주둔하는 나라의 법률질서를 따라야만 한다. 다만 외국군대는 주둔하는 나라에서 수행하는 특수한 임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쌍방 법률의 범위 내에서 일정한 편의를 제공받게 된다. 그런데 지위협정은 미군들에 대한 편의와 배려 차원을 넘어 한국의 주권을 상실할 정도로 타국의 협정에 비하여 지나치게 불평등하다. 범죄를 저질러도 제대로 처벌되지 않는다면, 배상의 책임이 강제되지 않는다면 범죄는 반복될 수밖에 없다. 미군들에게 온갖 특혜를 보장하여 오히려 범죄를 부추기는 지위협정은 미군피의자 신병인도 시기, 검찰의 상소권, 미군 피의자의 사법적 권리보호 등 몇 가지 부분적 손질이 아닌 협정의 전면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2) 한국정부의 적극적 재판권 행사

▶ 한국 정부의 재판권 행사 현황(88년 - 95년 8월)

연도	88	89	90	91	92	93	94	95	총계
계	1,266	1,117	974	1,041	642	624	710	499	6,873
행사	6	109	9	14	10	21	24	28	94
포기	1,260	1,109	965	1,027	632	603	686	471	6,751

위의 표에서 보듯이 정부는 지위협정에 보장되어 있는 권리마저 스스로 포기하는 등 미군범죄를 방치하여왔다. 이는 '범죄를 저질러도 별 고생 안한다'는 생각을 미군들에게 갖게 하여 수많은 재범자를 양산했다. 적극적인 재판권 행사는 미군범죄를 최소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다시금 정부의 주체적인 대응을 촉구한다. 또한 재판권이 미국에 있는 사건의 경우에도 철저한 점검 체계를 지위협정에 명시하여 범죄자가 미군당국에 의해 죄를 면제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할 것이다. 미군범죄 중 가장 많은 건수를 차지하는 교통범죄의 빈발은 '관대한 처벌'에 중요한 원인이 있다.

3) 미군범죄 전담 수사 기관의 설치

미군범죄에 대한 수사는 일반 형사 사건과는 달리 지위협정이라는 특수한 법령이 적용되므로 협정과 영어에 능통해야만 범죄미군에 대한 수사가 가능하다.

따라서 미군범죄에 철저히 대응하기 위해서는 미군주둔지역에 미군범죄 전담 수사 기관을 반드시 설치하여야 한다.

4) 미군 수감시설에 대한 기준을 재조정하고 수감시설을 대폭 늘려야 한다

알려진 바로는 미군을 수감할 수 있는 시설이 천안 소년 교도소 20여개의 감방뿐이다. 이는 일년에 1,000여건씩 발생하는 미군범죄자에 대한 수감시설로는 턱없이 부족하다.

합의의사록 제22조 제9항에는 "징역형의 집행기간 중 또는 유치를 위하여 이용되는 시설은 합동위원회에서 합의된 최소한의 수준을 충족시켜야 한다.... 합중국 군당국은 대한민국의 구금 시설에 유치되고 있는 피구금자와 접견하는 동안 의류, 음식, 침구, 의료 및 치아 치료 등 보조적인 보호와 물건을 공여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최소한의 수준'에 대한 구체적 기준이 필요하다. 샤워 시설과 조리 기구, 텔레비전, 라디오와 카세트 심지어 컴퓨터 놀이기구까지 갖추어 놓은 미군 감옥은 벌을 감내하는 장소라고 보기에 너무나 사치스럽다. 한국의 낙후된 수감시설도 문제지만 호화스런 미군 감옥에 대한 재조정이 필요하다.

5) 미군범죄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절차를 간소화하고, 배상을 청구하는 창구를 확대하여 피해자들의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

피해자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국가 배상 절차를 간소화해야 한다. 미군범죄 피해에 대한 배상 청구를 각 지방 검찰청에 있는 국가배상심의회에서만 접수하고 있다. 예를 들어 동두천에서 사고가 발생해도 가까운 의정부 지청을 두고 서울까지 와야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 각 지청에서도 국가 배상 청구 서류를 접수하여 배상 신청률을 높여야 한다.

6) 피해자들에게 치료비 등을 선지급해야 한다.

미군범죄 피해자들은 상당한 기간이 걸리는 배상 절차 때문에 자비로 치료를 해야하는 큰 부담을 떠안게 된다. 심지어 돈 때문에 치료를 포기하는 경우도 많다. 미군과 관련있는 직업을 가진 이들이 피해를 당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들은 미군과의 불편한 관계를 염려하고 생계에 지장을 받을까봐 범죄 대응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할 때가 많다.

이들의 고통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지위협정 제23조에 피해자의 치료비를 우선적으로 지급한다는 규정 마련이 시급하다.

미군당국은 여론의 확대로 인해 정치적 부담이 커질 때 치료비를 선지급한 사례가 있다.

7) 미군들의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미군은 한국의 자유와 평화를 지켜준다(은혜를 베푼다), 한국을 해방시켜 주었다는 등의 생각으로 한국인을 존중하지 않는다. 이것이 미군범죄를 일으키는 가장 기본 요인이자 출발점이다. 미군당국이 군인들에게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교육할 수 있도록 한국정부는 힘써야 한다.

8) 비정부단체의 운동을 지원해야 한다.

정부에서 풀어가기 어려운 일들을 비정부단체가 앞서서 이끌어나갈 수 있는 지형이 점점 넓어지고 있다. 정부가 기존 관계의 틀에 얹매여 쉽게 해결하지 못하는 사안에 대해 비정부단체들은 오히려 수월하게 접근할 수 있다. 미군문제도 마찬가지다. 정부는 비정부단체의 활동에 적극적 연대와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일본 오키나와 현청의 직속기구로 구성된 미군기지 대책반의 사례를 참조하는 것도 그 시작이 될 수 있다.

3. <군산미군기지 우리땅 찾기 시민모임>의 98년 활동

매주 금요일 기지 앞에서 금요집회를 이어오고 있는 시민모임은 미군범죄 근절 이외에도 공여지 재산권보호, 환경소음피해 해결, 한미행정협정 개정을 계속 요구하고 있다. 시민모임은 99년도 중점 사업으로 환경소음피해 해결을 주된 사업으로 잡고 있다.

▶ 5월 8일 : 군산미군기지 우리땅찾기 시민모임 발족식

- 장 소 : 군산 오룡동 성당

- 참가인원 : 참가 18개 단체회원/일반시민 200명

- 기자회견 : 4시

▶ 5월 14일 : 공항 사용료 인상안 시민설명회

- 장 소 : 군산공항 회의실

- 참석 : 상임대표 이하 각 단체 집행책임자 10명, 국방부, 건교부 담당자 6명

- 배포자료 : 행사자료집 (보관)

- 후속작업 : 보도자료

▶ 5월 29일 : 군산미군기지 현안과제 해결을 위한 시민토론회

- 장 소 : 군산 여성회관 3층

- 참석인원 : 130명

- 배포자료 : 자료집 (보존)

- 토론자 : 김재남(녹색연합 사무처장), 김용한(평택시민모임 대표), 권승로(시청 환경보호과장), 지역주민 (하제마을-고정섭 이상), 최종수

▶ 12월 18일 : 금요집회 1년 - 50회

- 장 소 : 군산미군기지 정문

- 참석인원 : 60명

[8] 사생활 침해 - 전자주민카드

97년 한해 동안 사생활 침해를 비롯한 인권침해 논쟁으로 전국을 들끓게 했던 전자주민카드가 꺼지지 않는 불씨로 98년까지 이어져왔다. 97년 12월 당시 여당이던 신한국당과 자민련이 동조해 전자주민카드 시행을 위한 법적 근거가 될 '주민등록갱신법'을 통과시켰기 때문이다. 전자주민카드 시행을 원칙적으로 반대하던 김대중 대통령과 새정치국민회의가 집권하게 되면서 전자주민카드는 폐기되는 것이라 생각한 것도 잠시, 행자부에서 기획 예산위에 전자주민카드 사업 예산신청을 하는 등 정부 각 부처에 대한 적극적인 로비에 나섬으로써 문제는 다시 불거졌다.

기획예산위와 감사원은 전자주민카드제도를 새정부 30대 중점관리사업으로 선정해 집중 분석을 하였고 그 결과를 98년 6월 27일 발표하였다. 결과는 소요액에 비해 효과가 없다는 부정적 판단이었다. 기획예산위와 감사원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행자부가 제출한 예산 2675억에는 초기 투자비만 들어가 있어 카드 재발급비용을 포함한 실제 예산소요는 5,024억원이 될 것이다. 여기에 민간업체에서 열람기와 판독기를 추가설치할 때 정부보조금까지 합하면 6547억으로 당초보다 실제 소요액이 두 배나 된다. 이외에 보안대책비 등이 추가된다고 보면 총 사업비는 7000억에서 최고 1조원까지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이렇게 많은 돈이 소요되는 것에 비해 행정효율이 적다. 기존의 주민등록증에 새로이 추가되는 것이라곤 세대사항과 인감에 불과한데다 세대사항을 빼면 주민카드 표면에 기재할 수도 있다. 따라서 단순한 증명기 기능을 하는 카드제를 구축하기 위해 많게는 1조원의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여기에 정부에 의한 개인통제의 우려도 크다. 디지털화한 주민정보를 중앙에서 집중관리하기 때문에 세계 최초로 전자주민카드제를 실시하면 국제 인권단체로부터 인권의 사각지대로 비판받으며 국제신인도가 떨어질 가능성도 크다.

주민등록증, 초본 발급 등 행정업무가 줄어드는 데 따른 행정인력과 비용감축 효과도 미미하다. 전자주민카드가 도입되더라도 카드발급인력과 주민등록사항, 입력, 수정 등 관리인력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중앙집중적인 전자주민카드제는 행자부 내부의 시·군·구 행정종합정보화 계획과도 배치된다. 시군구를 전산망으로 연결하면서 중앙에서 정보를 집중통제하는 데 돈을 쓰는 것은 중복투자가 될 것이다.

주민정보를 중앙발급센터로 일원화하면 기존 시도의 전산본부는 그 기능이 무용지물이 된다. 더욱이 지역정보화 기반과 위험분산기능을 약화시키는 역효과가 클 것으로 우려된다.

사용상의 불편도 만만치 않다. 세대원의 출생, 사망, 결혼, 주소 등이 변경될 때 실제 세대원의 주민카드를 함께 경신해야 하기 때문이다. 또 민원서류를 측근을 통해 대리접수하는 일도 불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기획예산위는 주민증 갱신은 앞당기되 플라스틱카드 도입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기존 종이로 만든 주민증은 비용이 적게 들지만 위변조 방지가 곤란한다. 하지만 플라스틱카드는 전자주민카드보다 비용이 저렴하면서 위변조 문제를 해결해주기 때문이다.(매일경제신문 98. 7. 16)

이렇게 기획예산위와 감사원이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자 행자부에서는 차관이 직접 나서 기획예산위를 방문하는 등 크게 반발하고 국회내무위원회를 상대로 로비를 벌이면서 전자주민카드 시행에 애착을 보였다.

상황이 이에 미치자 <전자주민카드 시행반대와 프라이버시권보호를 위한 시민사회단체 공동대책위원회>는 성명을 내고 "이미 '미니고속철'이라 불릴 정도로 그 사업의 타당성이 의문시되었을 뿐만 아니라 인권침해적 요소 때문에 결코 도입되어서는 안되는 제도임에도 관련 법률이 개정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예산을 신청한 행자부를 규탄"하며 "행자부는 전자주민카드 사업을 완전 포기하고 관련 법률의 재개정계획을 수립하고, 무모하게 추진해 온 관련 공무원을 징계하며, 주민등록제도를 인권 보호의 형태로, 지방화시대에 걸맞는 형태로 개선하라"고 촉구하고 광화문 청사 앞에서 시위를 하는 등 강력히 항의했다.

결국 98년 9월 행자부는 전자주민카드사업은 '유보'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행자부가 미련을 버리지 않고 언제든지 다시 시행할 기회만 틈틈이 보고있는 한 전자주민카드 문제는 꺼지지 않는 불씨로 남아있다.

한편 <공대위>는 전자주민카드를 근본적으로 막기 위해서는 제대로 된 프라이버시보호법이 제정되어야 한다며 프라이버시보호법 제정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9] 청소년 인권 - 전라고 학생 사건

<청소년 인권> 분야는 어찌 보면 할 말도, 사연도 많은 부분이겠으나 불행히도 이 분야에 대한 자료수집이 이뤄지지 않았다. 그러나 98년 8월에 있었던 전라고 학생의 전자우편(E-mail) 사건은 우리 사회의 청소년 인권현실을 단적으로 드러내주는 사건이라 생각되어 <청소년 인권>으로 묶어봤다.

인터넷으로 청와대 민원실에 학교생활에 대한 불만을 접수한 학생에게 해당학교측에서 오히려 징계를 내려 파문을 일으킨 사건이 있다.

전라고 2학년 임모군은 98년 8월 17일 '존경하는 대통령께'라는 제목으로 7개항의 학교실태를 적어 학교환경을 개선해 달라고 요구했다. 임군의 요구사항은 ▲밤 10시가 되면 버스가 끊기는데도 학교측이 늦게 끝내주고 ▲머리를 3cm로 제한해서 한달에 한 번 검사하기 때문에 이발비가 많이 들고 ▲과학실험 도구가 부족하고 ▲교육청의 앙케이트가 엉터리이고 ▲키와 맞지 않는 책걸상 시설이 많고 ▲자유시간이 없어 취미나 특기를 살릴 수 없다는 내용이었다.

컴퓨터 통신에 글이 실리자 청와대는 교육부로, 교육부는 또다시 도교육청으로 이첩했고 도교육청은 전라고를 상대로 자세한 경위를 조사한 후 그 결과를 98년 9월 7일 임군에게 전달했다.

도교육청은 임군에게 보낸 회신에서 "학창시절의 많은 학습은 자신의 성장 발달에 밀접이 되는 만큼 어려움이 있더라도 참고 잘 적용하여 이 나라의 훌륭한 동량이 되길 바란다"는 격려의 내용을 보냈다. 그러나 이러한 회신 이후 3일만에 학교측은 임군을 학교선도위원회에 회부, '학교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임군에게 무기정학(특별교육이수)이라는 중징계를 내렸다.

학부모와 학생들은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개선하게끔 열려있는 컴퓨터통신 내용을 가지고 학교측이 중징계를 내린 것은 학생들의 의견 개진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것으로 지극히 비교육적인 처사"라고 비난했다.

더구나 학교측은 임군에게 '학교에 대한 오해가 풀렸다'는 내용을 다시 인터넷에 띄워줄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져 더욱 충격을 주었다.(전라매일 98. 9. 17)

이에 <전교조전북도지부>와 <교육개혁과 교육자치를 위한 시민연대>는 성명을 내고 "학생의 정당한 의사표명권을 짓밟는 학교장을 징계하고 학생에게 내려진 징계를 철회하고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결국 도교육청은 전라고교장을 징계하여 김제용진중학교로 전출시켰다. 그리고 학교측은 다시 징계위를 열어 임군에 대한 징계를 무기정학에서 근신으로 낮추었다. 그러나 임군에

대한 사과는 이뤄지지 않은 채 마무리되었다.

자율적인 의견개진 하나로 엄청난 사건을 겪은 임군이 겪었을 상처는 아무도 보상해주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이를 지켜본 청소년 학생들에게 미칠 여파 또한 만만치 않았을 것이다.

이 사건은 입시위주 학교교육과 우리 사회에 팽배해 있는 권위주의적 교육문화가 낳은 구조적인 인권침해의 한 단면인 것이다.

교육부가 하루빨리 학교 내 청소년 인권실태를 조사하고, 학생권을 옹호하기 위해 학생회 및 자발적 단체구성의 권리와 시급히 보장해 주는 것 또한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부 록

- ## 1. 국가인권기구

론 부

두 번째 토론회
음모 탄생: 인권법 제정과 국가인권기구 설립을 위한 토론회

1. 국가인권기구

98년 12월 10일 세계인권선언 50주년 기념일을 앞두고 정부는 국가인권기구의 근거법률이 될 '인권법'을 제정하겠다고 선언했다.

민간단체들은 국가인권기구의 독립성과 실효성이 보장되기 위해서는 이 기구가 정부, 특히 법무부의 영향에서 완전히 벗어나야 한다고 주장하며 왕성한 압력활동을 벌였다. 전북 지역에서도 10월 1일 <올바른 인권법 제정과 국가인권기구 설립을 위한 토론회>가 열리고 이를 계기로 전북지역 민간시민사회단체들의 연대 움직임도 가시화하기 시작했다. 토론회에서 김승환 교수, 박민수 변호사 등은 "법무부가 내놓은 인권법 시안으로는 국가인권기구의 본연의 목표인 '인권의 보호와 향상'에 대로 기여할 수 없을 것"이라는 의견을 내놓았다. 또한 "바람직한 인권법 제정과 국가인권기구 설립을 위해서는 민간단체와 학계, 법조계 등의 광범위한 참여의 길이 열려야 할 것"이라는 점도 지적했다. 그러나 법무부는 국가인권기구를 자신의 산하기구화하려는 의도를 계속해서 드러냈다. 급기야 국제앰네스티(AI) 등 국제기구들조차 법무부의 인권법 시안의 문제점을 비판하기 시작했다. 12월 10일 인권법을 제정하려던 정부의 계획은 무산되고 마침내 99년 1월 김대통령이 민가협과의 만남에서 민간단체의 의견을 수용할 뜻을 밝힘으로써 국가인권기구 설립 문제는 새로운 국면에 들어서게 되었다.

한편 전북지역에서 국가인권기구와 관련된 민간단체들의 운동은 위 토론회를 전후로 <인권법 제정 및 국가인권기구 설치 전북지역 민간단체 공동추진위원회> 결성으로 구체화되지 못한 채 단발적인 캠페인에 그치고 말았다.

[참고자료1] 성명서

법무부의 국가인권위원회 설립법안 시안에 대하여

- 법무부가 25일 발표한 인권법 시안은 국가인권위원회에 매우 보잘 것 없는 권한만을 부여해, 국가인권위원회의 구실을 유명무실하게 했다. 법무부의 인권법 시안은 국가인권위원회를 특수법인으로 하고 수사기관의 인권침해 행위에 대해 제한적으로 권고하도록 하고 있다. 즉 인권침해와 관련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관할 사항을 수사 공무원 및 수용시설 종사자의 가혹행위 등 7가지에 국한해, 이를 제외한 모든 종류의 인권침해 사항을 다룰 수 없게 하고 있다. 또한 법무부 시안은 국가인권위원회가 기소권을 갖지 못한 채 수사기관

의 인권침해나 차별행위에 대한 의견을 다른 국가기관에 권고만 할 수 있게 함으로써 기구의 권한을 크게 제한하였다.

그러나 국가인권위원회는 유엔이 권고하듯이, 헌법 또는 법률에 그 구성과 범위가 명시돼 있는 가능한 한 광범위한 권한을 부여받아야 한다. 우리는 그러한 원칙을 전적으로 지지한다.

2. 국가인권위원회의 제1의 원칙은 정부로부터의 독립성이 유지돼야 한다는 점이다. 그러나 법무부가 발표한 인권법 시안은 국가인권위원회 이사를 법무부장관이 제청하고,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치결과를 법무부장관에 통보하도록 되어 있는 등 곳곳에 법무부가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장치를 두고 있다. 우려한 대로 국가인권위원회를 법무부에 종속시켜 국가기관에 의한 인권침해 사건을 제대로 다룰 수 없게 하려는 의도인 것 같다. 일개 법인인 인권위원회 조사관이 경찰, 검찰, 안기부 등 수사기관을 조사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3. 우리는 법무부가 발표한 인권법 시안은 단지 시안일 뿐이라고 믿는다. 우리는 전국의 30개 민간단체의 협의체인 <인권법 제정 및 국가인권기구 설치 민간단체 공동추진위원회>가 일관되게 주장하듯이, 인권법 제정과 국가인권위원회 설립에 민간단체를 포함한 국민의 의견이 민주적 절차를 거쳐 수렴돼야 한다고 믿는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와 민간단체가 참여하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야 한다고 믿는다.

1998년 9월 26일

전북평화와인권연대 공동대표 문규현 · 김승환

[참고자료2] 전북지역 공추위 구성 제안서

수신 : 전북지역 시민·사회단체

문의 :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제목 : 인권법 제정 및 국가인권기구 설치 전북 민간단체 공추위 구성 제안

전체쪽 : 2쪽

별첨자료. <공추위> 참여단체

참고자료가 필요하신 분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자료1. 인권법 제정과정과 내용에 관한 민간단체들의 입장

교수) 참고자료2. 인권법과 국가인권위원회 입법을 공개하라(강경선 방송통신대 법학

참고자료3. 법무부 보도자료

참고자료4. 기타 토론회/공청회 자료

<인권법 제정 및 국가인권기구 설치 전북지역 민간단체 공동추진위원회> 결성을 제안합니다.

만인의 인권을 위해 애쓰시는 귀 단체에 연대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희 전북평화와인권연대는 지난 대선 때 김대중 대통령 후보가 공약하고 새정부 100대 과제에서 재차 확인된 <인권법 제정과 국가인권기구 설립>에 관심 가지고 있다가 현재 <민간단체 공추위>에 참가하고 있습니다.

지난 25일 법무부가 발표한 <인권법 시안>은 국가인권기구를 법무부의 산하기관화하는 '법무부 강화안' 또는 '법무부 시녀안'에 다름아닌 한심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공추위는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통해 1.민간단체를 비롯한 범국민적 의사수렴 절차를 거쳐 국가인권기구를 설립할 것 2.국가인권기구에 준헌법적 위상과 준사법적 권한(실효성)을 둘 것 등을 요구했습니다.

인권법 제정과 국가인권기구 설립의 가장 큰 의의는 국민 개개인에게 인권개념을 널리 알리고 인권의식을 고취하는 데 있습니다. 밑으로부터 -또한 지역 민간단체로부터- 시민 한사람 한사람에게 다가가는 것이 올바른 국가인권기구 설립을 위한 결정적인 변수가 됩니다.

저희 전북평화와인권연대는 우리 지역의 여러 민간단체와 지역언론, 법조계, 학계 등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한 <인권법 제정 및 국가인권기구 설치 민간단체 공동추진위원회> 결성을 우선 지면을 통하여 제안드리며, 10월 1일 토론회를 통해 다시 한번 제안드릴 예정입니다.

<올바른 인권법 제정과 국가인권기구 설립을 위한 토론회>가 있습니다. 꼭 참석하셔서 좋은 의견 말씀해 주시고, 공추위 구성에 대한 좋은 의견도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별첨>

인권법 제정 및 국가인권기구 설치 민간단체공동추진위원회 참여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 유현석)

광주인권지기 (회장 이동균)

국제앰네스티한국지부 (대표 허창수)

민주주의법학연구회 (회장 박병섭)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최영도)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의장 이창복)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공동의장 곽노현)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상임의장 김정숙)

불교인권위원회 (대표 진관)

성공회대학교 인권과평화위원회(위원장 이재성)

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대표 박천웅)

인권운동사랑방 (대표 서준식)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이사장 김성재)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 김귀식)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이갑용)

전국민주주의민족통일유가족협의회(회장 배은심)

전북평화와인권연대 (대표 문규현)

주한미군범죄근절을 위한 운동본부 (상임공동대표 전우섭)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 (공동대표 김중배)

천주교인권위원회(위원장 김형태)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공동대표 박승원)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공동대표 이현숙)

한국교회여성연합회 (회장 이정옥)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위원회 (인권위원장 이명남)

한국기독교사회선교협의회 (공동대표 오충일)

한국동성애자단체협의회 (대변인 박두성)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 최영애)

한국여성단체연합 (대표 지은희)

한국여성민우회 (공동대표 이경숙)

한국여성의 전화연합(회장 신혜수)

[첨부자료3] · 국가인권위원회 설치 주요 정점 비교

항목	민간단체안	국민회의안	법무부 수정안
명칭	인권위원회법	국가인권위원회설치법	인권법
위상	독립적 국가기구/ 자율적 운영에 필요한 규칙제정권 부여	독립적 국가기구/ 자율적 운영에 필요한 규칙제정권 부여	특수법인(시안에서 이사회 제도 폐지, 민법상 재단법인 준용규정 삭제)/ 운영 관련 규정은 대통령령에 위임
법무부와의 관계	독립적인 국가기구이므로 법무부가 인사나 업무에 관여할 수 없음	독립적인 국가기구이므로 법무부가 인사나 업무에 관여할 수 없음	법무부가 주무관청으로서 위원회의 인사, 업무활동, 예산에 관여 / 설립 정관을 법무부장관이 위촉하는 위원들이 작성/ 운영에 관한 대부분의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 대통령령의 제·개정과정은 법무부 소관
위원장 임명 방식	국회의 청문절차 거쳐 대통령 임명	국회의 동의 거쳐 대통령 임명	제1안: 법무부장관의 제청, 국회동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 제2안: 국회의장, 대법원장, 법무부장관이 각각 상임위원 1인을 포함하여 3인씩 추천, 대통령이 임명

항목	민간단체안	국민회의안	인권법(법무부 수정안)
예산	독립적인 국가기구로서 감사원과 같이 예산편성시 위원회의 의견이 존중됨	독립적인 국가기구로서 감사원과 같이 예산편성시 위원회의 의견이 존중됨	법인이므로 정부출연금을 받게 되고, 예산회계법등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기금운영계획을 수립. 위원회의 예산요구서에 대해 법무부가 의견을 제시함으로써 사실상의 예산통제 수행
차별금지 사유	법무부(안)의 차별금지 사유에 사상, 성적지향, 병력, 행형기록 등을 추가로 포함시키고 이를 '예시적'으로 열거	법무부(안)의 차별금지 사유에 사상, 전과 등을 추가로 포함시키고 이를 '예시적'으로 열거	성별, 종교, 연령, 장애 등 14개 사유(애초 시안)에 "정치적 견해"를 추가/ 인종모욕과 성희롱을 특수한 유형의 차별행위로 규정/ 차별사유를 '제한적'으로 열거
조직	사무총장을 위원장이 임명/ 조사관, 전문위원, 인권도서관 등을 별도로 설치	사무총장을 위원장이 임명/ 인권연구기관, 인권자료실 등을 별도로 설치	위원장의 제청을 거쳐 사무총장을 대통령이 임명/ 사무총장은 상임위원과 동급
조사 대상	다른 국가기관에서 구제신청의 대상이 되는 인권침해행위에 대한 조사나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인권문제에 대한 조사 가능	공권력에 의해 인간의 존엄과 가치, 생명권, 신체의 자유, 사생활과 통신의 자유 또는 평등권을 침해당한 경우/ 법인, 단체 또는 사인에 의해 평등권을 침해당한 경우	'수사기관등의 인권침해행위(불법 구금, 체포, 가혹행위, 등)와 차별행위'
조사 방법	당사자출석, 자료제출, 현지조사가 원칙	당사자 출석, 자료제출, 현지조사가 원칙	서면조사가 원칙. 다만, 필요한 경우 당사자 출석요구, 현장조사 등 가능

항목	민간단체안	국민회의안	인권법(법무부 수정안)
조사불 용시 제재 방안	자료제출요구나 현지조사 거부시 최후의 조사수단으로 위원회의 과견검사를 통하여 압수·수색영장을 발급받아 압수·수색/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에 불응할 경우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규정	자료제출요구나 조사방해, 허위증언 등을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규정/ 과태료 부과	법무부장관이 과태료 부과
결정의 효력	합의권고 및 조정/ 구체적 구제조치(침해행위의 중지 등)에 대한 구제명령/ 법률, 제도 등의 개선 권고	합의권고 및 조정/ 책임자에 대한 징계 요구/ 구제조치의 이행 및 법률, 제도 등의 개선 권고	합의권고 및 조정/ 권고만 함
위원회 결정 불이행 시 조치	개인(민간인, 공무원)과 사적 시설의 경우 형사처벌 요구/ 국가기관에 대하여서는 그 기관의 장(長)에 대한 징계요구	규정이 없음	규정이 없음
인권 침해 예방을 위한 협의 의무	조사결과, 장래 인권침해 방지를 위하여 어떠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대상자에 위원회와 협의하여 조치를 강구하고 실시할 의무 부과	규정이 없음	규정이 없음

2.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성명서 모음

“우리는 왜 양심수 면회 전면허용과 폭력탄압·기만행위 최해룡 전주교도소장의 퇴진을 요구하는가?”

50년만의 정권교체로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큰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동안 굽어질 대로 굽어지고 휘어질 대로 휘어진 우리 사회의 허물어진 질서와 정의와 인권이 강물처럼 흐르게 되리라는 희망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김대중 당선자는 양심수 출신이었기에 양심수들에 대해서는 더 큰 희망을 가졌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슬프게도 지난 2월 2일 전주교도소에서 양심수들이 교도소 내의 처우개선, 접견불허 철회, 양심수 전원석방 등을 요구하며 단식농성에 들어갔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지금껏 전북지역의 인권단체들이 해왔던 양심수 면회가 97년 10월 경부터 유독 전주교도소만 불허되고 금지되고 있었기에 여러차례 교도소를 방문하고, 면회를 요청했으나 거절당해왔던 터라 양심수들의 집단단식농성 소식은 우려를 넘어 슬픔과 분노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98년 2월 9일 전북지역의 인권단체들이 전주교도소장을 방문하고 양심수 면회 등을 요구하여 마침내 2월 10일 오전 10시에 3인의 양심수 면회허용 약속을 받아냈습니다.

그러나 뻔뻔하게도 전주교도소측은 성직자들을 우롱하며 약속파기는 물론 야만적인 폭력을 자행하여 우리의 대표들을 교도소 밖으로 끌어내는 작태를 보였음은 물론, 교도소 앞에서 진행중이던 천막농성에 수백명의 교도대를 동원하여 폭력적인 강제 철거를 자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한 신부님이 린치를 당해 코피를 흘리고 어느 목사님은 다리에 부상을 당하고 차량이 훼손되고 여러 사람이 찰과상과 타박상을 입었습니다.

또한 우리가 점심식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교도관과 경찰 수백명이 합동 동원되어 밥을 엎고 항의하는 신부·목사님들에게 국물을 끼얹는 등 인간 이하의 과엄치한 행위가 계속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여러 명의 사람이 다치기까지 했습니다. 우리는 시대를 역행하는

최소장의 폭거를 가슴아파하며 양심수 면회가 이루어지고 최해룡소장이 퇴진할 때까지 무기한 농성을 계속할 것입니다.

1998년 2월 13일

전북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전북인권선교협의회, 전북평화와인권연대,
목회자정의평화실천협의회, 천주교정의구현전주교구사제단

김대중정권의 양심수 선별석방을 규탄한다.

현정부는 즉각 양심수 전원석방 의지를 천명하라.

1. 김대중정권은 13일 특별사면복권을 단행했다. 정부가 발표한 석방 양심수 명단에는 손유형, 강희남, 서경원, 황석영, 김하기, 황인오·인욱 형제, 장기수 신인영, 70세 이상 남파간첩 6명 등이 포함돼 있다.

2. 그러나, 최소한 247명의 전체 양심수 가운데 74명만이 선별 석방되고, 그것도 대부분 만기를 눈앞에 두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인 점에 우리는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전주교도소에서 석방되는 이종철, 남승균은 만기를 한달도 남겨두지 않았으며, 신성필은 만기를 하루 남겨둔 상태였다). 특히, 한총련 관련 학생들과 구국전위 사건 관련자들, 그리고 박노해·백태웅 등 사노맹 사건 관련자들이 일체 제외된 것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또 문규현신부에 대한 보안관찰법 사건, 서준식씨에 대한 국가보안법 사건, 등에 대한 공소취소도 즉각 이루어져야 했다. 우리 인권운동단체들은 양심수는 그들이 양심수라는 이유만으로도 감옥에 갇혀 있어서는 안 될 사람들이라는 점을 누차 주장해 왔다. 그렇기에 양심수 석방에 선별석방이 있을 수 없다. 따라서 현정부에 이번 양심수 석방의 기준이 무엇이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우리 인권단체들은 현정부가 양심수에 관한 이렇다할 원칙없이, 광범위한 양심수 석방 요구에 밀려 마지못해 생색내기식으로 숫자를 채운 석방조치가 아니었나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3. 김대중정권은 대통령 취임을 경축하고 국민화합을 도모하는 차원에서 대사면·석방을 단행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50년만이라는' 정권교체와 새정권 출범을 자축하고 진정한 국민화합을 도모하려 했다면, 비리사범인 이양호 전 국방장관 등은 석방하면서 양심수는 선별석방한 것은 자기기만적인 행위가 아닐 수 없다. 김대중정권은 즉시 양심수 전원석방 의지를 천명하고, 수일 안에 구체적인 추가 석방 계획을 마련하여 공개해야 할 것이다. 그와 같은 의지가 없을 때, 양심수 가족들과 인권운동단체들은 김대중정권의 반개혁적 본질을 밝힘과 동시에 양심수 전원석방을 위한 투쟁을 강력하게 전개해 나갈 것이다.

1998년 3월 13일

전북평화인권연대 / 전북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 전북인권선교협의회 /
천주교정의구현전주교구사제단 / 목회자정의평화실천협의회

전향제도의 변형인 준법서약제도를 반대한다

어제 법무부는 사상전향제를 폐지하고 이달부터 준법서약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장관은 전향제도에 따른 양심의 자유 침해논란을 배제하기 위해 전향제도를 폐지하고 준법서약제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는 정부가 전향제도에 대해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법제도임을 인정했다는 점에서 부분적으로 의미가 있다. 그러나 시국·공안사범을 대상으로 "법질서를 준수하고 폭력을 사용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문서로 서약받겠다는 것은 또 다른 사상전향제도를 도입하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

법무부는 준법서약제 도입에 대해 "준법서약은 '대한민국 체제 질서와 법을 인정하느냐'를 묻는 것이기에 사상의 포기를 요구하는 전향제도와는 다르다"고 말한다. 그러나 이 제도는 실제로는 사상은 물론 헌법적 권리인 양심의 자유마저도 더욱더 침해하는 것이다. 국가보안법 위반자를 비롯한 시국 공안사범은 대다수가 확신범(양심수)이다. 국가보안법을 옹호하고 있는 '준법서약'을 받아내겠다는 것은 이들에게 국가보안법의 인정을 요구하는 것이며, 그것이 곧 전향공작이 아닌가!

이들에게 전향서 대신 준법서약서를 받겠다는 것은 또한 개인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전향제도와 다를 바가 없다. 인간의 내심을 한 정치인이 판단하여 전향대상자로 규정하는 것이나, 인간의 내심을 표출할 것을 강요하는 제도 등은 결코 인권의 원칙에 맞지 않는다.

정부는 전향제도를 무조건 철폐하고 양심수를 전원 무조건 석방해야 한다. 그리고,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라는 국내외 인권단체들의 반복된 촉구에 귀기울여야 한다. 국제사면위원회 등 국제인권단체들은 "인간의 내면에 가진 신념이나 사상을 바꾸어야만 사면 가석방 등의 혜택을 준다는 것은 사실상 특정사상을 강요하는 것"이라면서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고 강조해왔다. '인권'을 말하는 세계 어느 나라에도 반성문을 전제로 정치범을 석방하지 않는다. 우리는 현 정부가 인권에 관한 국제사회의 기준과 원칙을 이제부터라도 준수할 것을 촉구한다.

1. 전향제도의 변형인 준법서약제도 철회하라 !
2. 모든 양심수를 조건없이 석방하라 !

1998년 7월 2일

전북평화인권연대 공동대표 문규현·김승환

모든 양심수를 조건없이 석방하라 !

- 정부는 14일 오전 8.15 특별사면 내용을 발표하며, 준법서약서를 제출한 '공안사범' 104명 가운데 94명을 형집행정지·가석방 등으로 석방하고 9명은 '감형'조치를 내린다고 밝혔다. 우리는 이번 사면조치를 보면, 현 정부에 정략적 고려는 있는 반면 인권개선의지는 전혀 없음을 확인했다.
- 이번 특사로 석방된 양심수는 94명이고, 계속 구금되는 양심수는 360여명이다. 반면, 권노갑 등 비리연루자 및 헌정파괴범들의 공민권은 완전히 회복시켜 주었다. 정부는 5.18 관련범죄자들을 석방사면하면서 죄상이 중한 전두환·노태우와 형평성을 맞추었다고 발표했다. 양심수 가운데 사노맹 사건의 백태웅·박노해씨는 풀면서 그들보다 죄상이 가벼운 현정덕씨는 왜 계속 가두는가. 말장난 치고는 심하다.
- 양심수 석방의 기준을 준법서약 여부에 둔 정부의 조치는 인권정책의 실질적인 후퇴라고 평가할 만하다. 정부가 전향제를 폐지하는 듯 하면서 도입한 준법서약제의 결과로, 특히 17명의 비전향장기수들이 전혀 석방되지 못했다. 이들을 언제까지 가두겠다는 것인가. 정부의 조치는 반인륜적인 처사로 규탄받아 마땅하다.
- 석방된 양심수들이 겪게 될 고통 또한 만만치가 않다. 정부는 석방된 양심수들에 모두 가석방과 형집행정지 처분만 내려 실질적인 사면을 거부했다. 준법서약 강요로 인한 내심의 고통은 물론이고, 교도소 문밖을 나서자마자 국가보안법, 특히 보안관찰법에 의한 감시도 시작됐다. 정치적·정신적으로 이들을 가두고 무장해제시키겠다는 속셈이다. 이 모든 사실로부터 우리는 김대중 정권이 반인권적이라고 규정하지 않을 수 없다.
- 이번 특사와 관련하여 확인된 점은 김대중 정권이 과거 정권의 전철을 밟아가고 있고, 소위 '국민의 정부'도 아니라는 사실이다. 일부에서는 아직도 김대중 정권의 개혁의지에 기대를 걸고 있는 듯 하나, 그 또한 기대할 바가 못된다. 김대중 정권에게 이제 더 이상 '실망'할 일은 없을 것 같다.

- 모든 양심수를 조건없이 석방하라 !
- 국가보안법과 보안관찰법을 즉각 폐지하라 !
- 준법서약제를 비롯한 각종 전향공작 장치를 해체하고, 양심·사상의 자유 보장하라 !

1998년 8월 15일

전북평화와인권연대 / 전북민가협 / 전북인권선교협의회
/ 천주교정의구현전주교구사제단 / 목회자정의평화실천협의회

정부와 현대자동차는 공권력 투입과 정리해고를 철회하라!

전북평화와인권연대(공동대표 文奎鉉, 金承煥)는 현대자동차 사태를 과국으로 몰고가는 정부와 현대자동차 사측의 공권력 투입과 정리해고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현대자동차 노동자들은 그동안 사측이 일방적으로 실시한 회망퇴직으로 9천여명이 넘는 동료들을 떠나보냈고, 최근 거듭되는 사측의 정리해고 요구에 대해서 정리해고 회피를 위한 각종 '양보안'까지 제시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사측이 현재 조장하고 있는 공권력 투입과 정리해고 강행의 협박은, '고통분담'은 커녕 더이상 노사 안정과 사회 개혁에 대한 최소한의 실천의지 조차 포기하는 것이나 다름없는 것으로 규탄해 마지 않는다.

사측은 이미 노조활동가들을 중심으로 한 정리해고를 대대적으로 자행하며 정부 공권력 까지 동원하여 자신의 탐욕을 채우려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는 노동자·민중의 생존권 요구에 귀기울이는커녕, 이른바 '제2의 건국' 운운하며 더욱더 수구 보수세력들에 의지하여 대규모적인 고용파괴와 실업자 양산에만 골몰하면서 삶의 벼랑 끝에서 절규하는 노동자·민중들을 죽음으로 내몰고 있다.

정부와 현대자동차 사측은 사태를 과국으로 내모는 경찰병력 투입과 탐욕적 정리해고 방침을 즉각 철회하고 당면한 노동자의 생존권적 요구를 전면 수용해야 한다. 만약 경찰병력 투입이 야기된다면, 문제는 더이상 노사뿐 아니라, 정부와 자본의 실정과 탐욕에 맞선 전국민적인 항쟁으로 확산될 것이며, 이에 대한 책임은 모두 정부와 자본측에게 물어질 것이다.

1998년 8월 19일

전북평화와인권연대 공동대표 문규현·김승환

우리는 문규현 신부의 무죄를 주장한다.

1.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소속 9명의 신부들이 북한을 방문하였다. 그들은 방북에 앞서 통일부에 방북허가신청서를 냈고, 통일부는 이들의 방북을 허가하였다. 그러나 그들의 방북은 북한측에 의하여 주춤거리기 시작했다. 사제단이 북경 주재 북한대사관에 비자신청을 하면서 그 방북목적을 "평양장충성당 10주년 기념미사"라고 쓰자, 평양에서는 "범민련의 대표로 오지 않으면 입국할 수 없다"라는 팩스가 날라왔기 때문이다.

2. 고심 끝에 사제단은 "8.15 대축전에 참가할 수도 있으나, 우리는 범민련과 전혀 무관하며, 이런 방식의 행사가 통일운동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팩스를 보냈다. 안기부와 검찰은 바로 이 문구를 물고 늘어졌다. 문규현 신부가 처음부터 8.15대축전에 참석할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다. 그 증거로서 문규현 신부가 안기부에 제출한 팩스 내용 중 바로 이 부분을 삭제했다는 것을 들었다. 그러나 안기부가 도청으로 얻어낸 팩스 원문에서는 잠입·탈출죄의 고의를 전혀 찾아 볼 수가 없다. 도리어 북한측의 일처리 방식을 비판하고 있다. 또한 문규현 신부는 자신이 안기부에 제출한 팩스 내용 중 위 부분이 언제 어떻게 빠져 있었던지도 모른 채, 팩스 내용을 자발적으로 제출하게 되었다. 문규현 신부가 안기부에 제출한 팩스 내용에서도 잠입·탈출죄의 고의를 발견할 수 없음은 물론이다.

3. 평양 순안비행장에 도착한 사제단은 "우리는 평양장충성당 건립 10주년을 맞아 성모승천대축일에 기념미사를 봉헌하기 위해서 방북했다."라고 방북의 목적을 분명히 밝혔다. 사제단은 김일성의 시신이 안치된 금수산기념궁을 방문하였고, 이 때 문규현 신부는 "경애하올 김일성 수령님의 영생과 … 통일을 기원합니다."라는 내용의 서명을 하였다. 공안당국은 이 부분이 찬양·이적동조죄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적과 동지 사이일지라도 적이 죽으면 그 영전에 가서 의례적인 수사(여기에서는 북한 사람들이 통상적으로 쓰는 수사)로 조의를 표하는 것은 우리의 오래된 미풍양속이다. 이것이 어떻게 국가보안법 제7조가 규정하는 바처럼 "...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 북한을 찬양하고 이적동조한 행위라고 볼 수 있는가?

4. 사제단이 평양에 가서 보니 8월 15일 장충성당 미사는 일정 자체에 잡혀 있지 않았다. 북한측의 의도를 알아차린 사제단은 다음 날(15일) 평양에서 철수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북측에 통보하였다. 북측의 장재철 위원장은 "신부님들은 돌아가면 그만이

지만 우리 북한천주교회의 처지는 어떻게 됩니까? 불쌍한 양들을 돌봐주십시오.”라고 말하고, 사제들에게 90도로 절하면서 눈시울을 적셨다. 14일 오후 북측에서는 새로운 제의를 하였다. “어느 분이든 2명만 판문점에 보내 주신다면, 같은 시간에 장충성당에서 신자들과 함께 미사를 봉헌할 수 있도록 하고, 주일(16일) 미사도 약속하겠다.”는 것이었다. 이 때 사제들의 고뇌는 다시 시작되었다. 만일의 경우의 처벌을 감수하고서라도 북측의 조건을 들어 주는 대신, 본래의 방북목적인 장충성당 10주년 기념미사를 봉헌해야 하느냐 아니면 그대로 철수해야 하느냐라는 고뇌에 빠진 것이다. 이 순간 사제가 걸어야 하는 길은 어느 것인가? 사제들은 신앙양심에 따라 결단을 내렸다. 그것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 신앙의 길을 걷고 있는 양들을 외면할 수 없다는 결단이었다. 이 경우 국가의 법은 이들에게 다른 결단을 기대할 수 있는가?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는 결코 법적 비난가능성이 성립될 수 없다. 이러한 행위는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범죄행위가 아니라는 뜻이다.

5. 사제단을 대표하여 문규현 신부와 전종훈 신부 2명이 판문점 8.15대축전에 참석하였다. 그 자리에서 문규현 신부는 사제단의 의견을 종합하여 작성한 연설문을 다음과 같이 낭독하였다. 1) 사제단은 평양장충성당 10주년 기념미사 봉헌을 위해 방북하였으며 지금 같은 시각 7명의 사제들이 미사를 봉헌하고 있다는 것, 2) 북측이 먼저 제안하고 남측이 수락한 통일대축전을 북측에서 거부한 것은 유감이라는 것, 3) 7·4 남북공동성명과 남북기본합의서를 이행하라는 것, 4) 남북대화를 재개하라는 것, 5) 거례의 하나됨을 위하여 기도한다는 것이었다. 위 발언 중 어느 것이 찬양·이적동조죄에 해당하는가? 그리고 이러한 발언이 임입·탈출죄의 고의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할 수 있는 발언인가?

6. 서울지법은 서울지검이 신청한 문규현 신부에 대한 구속영장을 “도주 또는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발부하였다. 한 평생 민주주의와 민족통일을 위해 헌신해 왔던 사제가 어디로 도주한다는 말인가? 안기부는 불법적인 팩스 도청을 통해서 팩스 교신 내용을 모두 알고 있었고, 북한에서의 활동 내용도 자세하게 알고 있는데, 어떤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는 것인가? 이는 인신 구속권의 행사를 넘어서서 이 나라 사제들의 인격을 총체적으로 모독하는 행위이다. 문규현 신부는 법적으로도 도덕적으로도 비난받을 행위를 전혀 하지 않았다. 현 정권은 문규현 신부를 즉각 석방하라!

1998년 9월 21일

천주교정의구현전주교구사제단 · 전북평화와인권연대

법무부의 국가인권위원회 설립법안 시안에 대하여

1. 법무부가 25일 발표한 인권법 시안은 국가인권위원회에 매우 보잘것 없는 권한만을 부여해, 국가인권위원회의 구실을 유명무실하게 했다. 법무부의 인권법 시안은 국가인권위원회를 특수법인으로 하고 수사기관의 인권침해 행위에 대해 제한적으로 권고하도록 하고 있다. 즉 인권침해와 관련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관할 사항을 수사 공무원 및 수용시설 종사자의 가혹행위 등 7가지에 국한해, 이를 제외한 모든 종류의 인권침해 사항을 다룰 수 없게 하고 있다. 또한 법무부 시안은 국가인권위원회가 기소권을 갖지 못한 채 수사기관의 인권침해나 차별행위에 대한 의견을 다른 국가기관에 권고만 할 수 있게 함으로써 기구의 권한을 크게 제한하였다.

그러나 국가인권위원회는 유엔이 권고하듯이, 헌법 또는 법률에 그 구성과 범위가 명시돼 있는 가능한 한 광범위한 권한을 부여받아야 한다. 우리는 그러한 원칙을 전적으로 지지한다.

2. 국가인권위원회의 제1의 원칙은 정부로부터의 독립성이 유지돼야 한다는 점이다. 그러나 법무부가 발표한 인권법 시안은 국가인권위원회 이사를 법무부장관이 제청하고,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치결과를 법무부장관에 통보하도록 되어 있는 등 곳곳에 법무부가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장치를 두고 있다. 우려한 대로 국가인권위원회를 법무부에 종속시켜 국가기관에 의한 인권침해 사건을 제대로 다룰 수 없게 하려는 의도인 것 같다. 일개 법인인 인권위원회 조사관이 경찰, 검찰, 안기부 등 수사기관을 조사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3. 우리는 법무부가 발표한 인권법 시안은 단지 시안일 뿐이라고 믿는다. 우리는 전국의 30개 민간단체의 협의체인 <인권법 제정 및 국가인권기구 설치 민간단체공동추진위원회>가 일관되게 주장하듯이, 인권법 제정과 국가인권위원회 설립에 민간단체를 포함한 국민의 의견이 민주적 절차를 거쳐 수렴돼야 한다고 믿는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와 민간단체가 참여하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야 한다고 믿는다.

1998년 9월 26일

전북평화와인권연대 공동대표 문규현 · 김승환

전주교도소는 배재문씨 사망사건 의혹을 남김없이 해명하라

전북평화와인권연대(공동대표 文奎鉉, 金承煥)는 전주교도소 재소자 배재문씨(39세) 사망 사건에 대해 전주교도소측 발표에 곧이곧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수많은 의혹이 있다고 판단하고 전주교도소 당국이 이에 대해 책임있게 해명할 것을 촉구하면서 12월 7일 전주교도소측에 아래와 같은 공개질의서를 보내고 조속히 답변해 줄 것을 요구했다.

첫째 전주교도소측은 배씨가 남겼다는 유서의 장수와 형식 등을 처음부터 정확히 발표하지 않았음은 물론, 친형제들에게 보내진 유서들을 정당한 이유없이 여전히 공개하지 않음으로써 진실규명을 위한 노력을 기피한다는 의혹이 짙음은 물론 교도관의 유서대필이라는 충격적인 의혹마저 불러일으키고 있다. 둘째 전주교도소측은 11월 21일 새벽 4시경, 숨진 배씨의 큰형 재준씨(53세)에게 동생의 사망소식을 통보하면서 진정체 투약사실을 시인했고 다음날 김승환(전북대 법대) 교수에게도 그 사실을 시인한 바 있는데 뒤늦게 그 사실을 부인함으로써 배씨 사인에 대한 의혹을 더욱 부채질하고 있다. 셋째 전주교도소측은 배씨가 목매 있는 것을 11월 20일 오후 11시 20분경 발견하고 전주 예수병원으로 긴급 후송하였으나 도착 즈음 숨졌다고 주장하나 당시 시신을 최초 검안한 의사는 여러 가지 근거를 들어 배씨가 사망한지 '장시간됐다'고 말한 바 있다. 그런데 전문 의학지식이 없는 교도관들과 교도소장(김정재)은 후송도중 배씨가 맥박이 있었다고 상반된 주장을 하고 있어 사망시각 조작 의혹을 낳고 있다. 넷째 교도소가 국가안보시설이 아님에도 12월 5일 유족과 변호사에게 사전현장을 공개하기 전까지 정당한 이유없이 현장을 공개하지 않음으로서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해 왔다. 이 또한 전주교도소측이 이 사건의 진실이 드러나는 것을 꺼리는 무슨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을 낳는다.

이밖에도 유족과 사회단체 및 국민들이 품고 있는 의혹은 한 두 가지가 아니다. 전북평화와인권연대는 전주교도소가 사건의 진실을 축소·은폐·조작하려 한다는 의혹을 불식시키기 위해 위에 제기한 의문에 성실히 답변해 줄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재소자 처우와 관련해 그동안 지탄의 대상이 돼온 전주교도소가 이번 사건의 의혹들을 전면 해명함으로써 거듭나기를 촉구하며 만약 진실을 은폐하려는 어떠한 시도라도 사실로 증명된다면 그 이후의 사태는 책임질 수 없을 만큼 막중한 것이 될 것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바이다.

1998년 12월 7일

전북평화와인권연대 공동대표 문규현·김승환

인물존안 카드 작성에 분개한다.

즉각적인 정보 공개를 실시하라!!

1. 지난 12월 15일 일간지에 밝혀진 사회단체 및 정, 관, 재계의 광범위하고 치밀한 사찰 카드를 작성토록한 경찰청과 안기부의 국내 정치 개입의혹을 증폭시키는 보도를 보면, 이 토록 분개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그 동안 '국민의 정부'라고 하여 과거 군사독재정권의 차별성이 있다고 믿어 왔다. 하지만 구시대적 사고인 인물존안카드를 과거 군사독재정권보다 더 치밀하게 작성케 했다. 이를 뒷받침하는 것은 경찰청에서 다시 공문을 발송, 문제가 되는 항목을 삭제토록 한 행위에서 볼 수 있다.
2. 그리고 안기부가 이를 배후 조종하였다는 의혹에 있어서도, 국내 정치에는 개입하지 않겠다던 정권 초기의 약속과는 달리 여전히 국내 정치에 깊숙이 개입하고 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이는 결국 국민들을 속이고, 엄청난 정보예산을 사용하며, 그 동안의 정보공작 정치의 시대로 후퇴하고 있음을 확인한 바이다.
3. 우리는 지금 서울에서 진행하고 있는 행정정보공개청구활동을 전북지역에서도 동시적으로 진행하고자 한다. 그래서 전북도경은 즉각적인 행정정보공개청구서에 성의 있는 답변과 더불어 행정자치부나 경찰청에서 밝힌바 있는 전북지역의 인물존안카드가 작성된 바 있는지, 있다면 어떤 방식으로, 어떤 인물이며, 어떤 사회단체들인지 즉각적으로 공개해야 할 것이다.
4. 이는 결국 그 동안 피와 투쟁으로 쌓아왔던 민주화를 후퇴시키는 소행이며, 앞으로 정치민주화를 위한 역정을 또한 후퇴시키는 결과를 낳을 것이다. 이번 인물존안카드 작성에 대한 일련의 사태를 보면, 그 어떤 정부라도 민주주의를 후퇴시키고자 한다면 무서운 저항과 도전을 받게 될 것이며, 아직도 구시대적 유물인 정보공작정치를 선호하고 있다면 이는 더 이상 국민의 정부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다. 하여 다시 한 번 강력히 주장하는 바 행정정보공개에 즉각적으로 응할 것을 주장하는 바이다.

1998년 12월 19일

전북평화와인권연대(공동대표 문규현·김승환)

천주교정의구현전주교구사제단(대표 김진화)

인권운동젊은연대(대표 정현중)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전북평화와인권연대는

인간이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보편적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인권 운동단체입니다.

우리 주위에는 국가권력과 집단의 부당한 제도적·자의적 폭력 앞에서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를 빼앗긴 채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이들을 기억하고 지원해 주십시오. 또한 이들에게 보다 큰 용기와 힘을 주시고 싶은 분은 후원회원이 되어 저희와 함께 해 주십시오.

이런 일을 합니다

■신문 발행사업

- 주간 인권신문 「평화와인권」 발행
- 지역 인권사건에 대한 정확한 보도

■평화·인권 교육

-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평화 및 인권교육 활동
- 인권운동 활동가들을 위한 교육 활동

■평화·인권자료실 운영

- 인권관련 자료들을 관리
- 인권정보 데이터 베이스화

■프라이버시권 보호운동

- 「프라이버시보호법」 제정 활동

■생활인권운동

- 지역 사회복지 운동
- 기타 사회개혁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

■연대사업

- 국내외 인권단체들과 연대
- 인권보호와 신장을 위해 지역 시민·사회단체들과 연대

■구속자 지원사업

- 억울한 옥살이를 하는 장기수·양심수들을 위한 후원
- 행형법 개정운동등 구금자 권리보호운동

■인권영화제 개최

- 시민들과 함께하는 인권영화제

“작은 정성으로 인권을 지키는 등대가 되어 주십시오.

함께 하시면 더욱 큰 힘이 됩니다.”

도움을 주실 분은 아래의 계좌를 이용하십시오

국민은행 512-21-0065-982 전북은행 535-21-0304454

우체국 402297-0062450 예금주 문규현

주간 평화와인권

주간 인권신문 「평화와인권」은

각종 권리 침해에 대한 고발과 인권의 신장을 위해

한국의 인권상황과 존엄성을 위해

오늘도 취재와 글쓰기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평화와인권」은 쉬지 않고 달려갑니다.

「평화와인권」은

전북지역 인권성장의 한 축이 될 것입니다.

한국 인권 평화 운동

'98 전북인권보고서

펴낸 날 : 1999년 2월 28일

펴낸 이 : 문규현 · 김승환

펴낸 데 :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주 소 : 전주시 완산구 전동 77

대건신협 3층 (560-040)

전 화 : (0652)231-9331

팩 스 : (0652)231-9332

통신아이디 : onespark(나우누리 · 천리안 · 녹두넷)

전자우편 : onespark@kor.inp.or.kr

홈페이지 : <http://kor.inp.or.kr/onespark>